

당 헌



당 헌

【 1997년 11월 21일 제정 】

개정	1998. 4. 10	1998. 11. 26
	2000. 5. 12	2002. 2. 27
	2002. 4. 2	2002. 5. 10
	2003. 4. 11	2004. 3. 4
	2004. 3. 23	2004. 5. 28
	2007. 5. 21	2007. 10. 12
	2010. 2. 19	2010. 9. 30
	2011. 7. 2	2011. 7. 4

2011. 12. 19 2012. 2. 13

2014. 2. 25

전면개정 2005. 11.1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새누리당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인류공영의 정신과 빛나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① 새누리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 2 장 당 원

제 4 조 (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 5 조 (책임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 책임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 조 (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③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제81조에 따라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의원총회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⑥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 기회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의결기관의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시 여성을 50%로 한다.

2. 각종 선거(지역구)의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30%로 하도록 한다.

3.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을 30%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 8 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제 8 조의 2 (당소속 시.도지사와의 당정협의) 당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 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 조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

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2.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3.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4.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제 11 조 (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 12 조 (선출직 위원장 연임 제한) 중앙위원회 의장 등 선출직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당 기 구

제 1 절 전당대회

제 13 조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

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0,000인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대표최고위원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당소속 국회의원
 5. 당소속 시·도지사
 6. 전국위원회 위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8.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9. 국책자문위원회 위원
 10. 재정위원
 11.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12. 당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13.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14.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5. 새누리당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16.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17.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18.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
- ②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

시까지로 한다.

- ③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은 특수직능 및 네티즌을 각각 대표하는 당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④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은 장애인 당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⑤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중 5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 ⑥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 중 20% 이상 40% 이하는 만45세 미만 당원으로 구성한다.
- ⑦ 전당대회 대의원 결원시 선임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 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 4.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의 지명
 -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 15 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임시전당대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 한다.
-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6 조 (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제 17 조 (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전국위원회

제 19 조 (구성)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는 1,0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대표최고위원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포함)
3. 당소속 국회부의장
4.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5. 상임고문
6.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7. 중앙위원회 의장
8. 시.도당 위원장
9. 당소속 국회의원
10. 당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1. 중앙당 각종위원회 위원장
12.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3. 국책자문위원회 임원
14. 재정위원회 임원
15. 시.도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16. 중앙위원회 선출 전국위원
17.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18. 전국청년대회 선출 전국위원

19. 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위원
20. 직능과 계층을 고려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한 전국위원 20인
21.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22. 당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23. 당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24.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장

제 20 조 (기능) ①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② 전국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1 조 (소집 및 의사) ①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국위원회의 소집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 전국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단) ①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국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 2인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③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 절 상임전국위원회

제 23 조 (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전국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장·부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전국위원회의 위원은 전국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

2. 당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3. 시·도당 위원장

4.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5.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회의 선임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6. 중앙위원회 의장 및 중앙위원회 선출 전국위원 4인
 7.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5인
 8. 전국청년대회 선출 전국위원 3인
 9. 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위원 3인
 10. 당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1.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전국 대표의원
- ④ 상임전국위원회의 위원은 선출직 이외의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으며,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 ⑤ 상임전국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4 조 (기능)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기본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4.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5.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결
6.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7. 전국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8.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제 25 조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 4 절 대표최고위원

제 26 조 (지위와 권한) ① 대표최고위원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

② 대표최고위원은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 구성 시 최고위원회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표최고위원은 당직자 임명에 관하여 추천권을 가진다.

④ 대표최고위원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7 조 (대표최고위원의 선출) ① 대표최고위원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대표최고위원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70%, 여론조사결과를 30%

반영한다.

③ 대표최고위원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표최고위원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대표최고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위원

중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2. 궐위된 대표최고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다시 선출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대표최고위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8 조 (선출직 최고위원)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제2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선거에서 2위 내지 5위의 득표자로 한다. 다만 5위 득표

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② 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잔여정원은 전국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제 29 조 (임기)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0 조 (권한대행)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1 조 (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무에 관한 대표최고위원의 자문기

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

원이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대표최고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대표최

고위원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④ 대표최고위원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

규로 정한다.

제 5 절 최고위원회의

제 32 조 (구성) ①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최고위원
2. 원내대표
3. 제28조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4인
4.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인
5. 정책위원회 의장

③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대표최고위원으로 한다.

제 33 조 (기능)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의결
4.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5.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7.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 34 조 (소집 및 의사)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5 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제81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대표최고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절 당무집행기구

제 36 조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전략

기획본부, 홍보기획본부,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제 37 조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 지원·인사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둔다.

② 전략기획본부에 주요 정치현안 및 전략을 관장하는 전략기획본부장과 이를 보좌하는 기획위원장, 국민공감위원장 등을 둔다.

③ 홍보기획본부에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의 홍보를 관장하는 홍보기획본부장과 이를 보좌하는 부분부장, 대변인 등을 둔다.

④ 사무부총장, 기획위원장 및 부분부장 등은 소관 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당사무를 수행하며, 소관 부서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앙사무처와 본부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 38 조 (임명) ① 사무총장·전략기획본부장·홍보기획본부장은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사무부총장, 기획위원장, 부분부장 등은 소관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39 조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①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산하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

- 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당직자 임면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절 중앙위원회

- 제 40 조 (구성 및 기능)** ①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직능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위원회는 제19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을 선출하며, 선출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중앙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41 조 (임원)** ① 중앙위원회에 의장 1인과 수석부의장 1인, 20인 이내의 부의장(시도당연합회 회장 대표 포함)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둔다.
- ② 의장은 중앙위원회 선거인단대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의장을 포

함한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42 조 (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의 수
입기관으로 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 절 윤리위원회

제 43 조 (구성) ①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관을 윤
리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⑤ 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4 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
분 심의.의결.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
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
3. 당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기구에 대한 표창 심의.의결
4. 당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
한 감사장 수여 심의.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 9 절 재정위원회

- 제 45 조 (구성)** ①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 ②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 ③ 재정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재정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6 조 (기능)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 받은 당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 조 (준칙)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편성·집행·당비납부 기준액 및 납부절차에 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 10 절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 48 조 (구성)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최고위원회의의 위원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역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각각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는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 ⑤ 제4항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시에는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⑥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례대표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은 각각 중앙당 및 시·도당 비례대표공천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⑧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9 조 (기능)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당 소속 각종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선정
4. 우선추천지역 선정

② 제1항제1호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 11 절 인권위원회

제 50 조 (구성 및 기능) 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 인권신장을 위한 당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인권관계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위원회는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인권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인권위원회에 법률지원단과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를 둔다.

⑤ 인권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 절 인재영입위원회

- 제 51 조 (구성)**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발굴과 인재영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재영입위원회를 둔다.
- ② 인재영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인재영입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인재영입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⑤ 영입된 인재는 각종 선거 공직후보자추천, 당직 및 당원협의회 구성에 있어 제6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⑥ 인재영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2 조 (기능) 인재영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 업무
2.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유대강화, 협조
3. 재야단체 및 관련 이익집단과의 원활한 교류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제 13 절 국책자문위원회

- 제 53 조 (구성 및 기능)** ① 최고위원회의의 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책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국책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부위원장을 두며, 최고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국책자문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국책자문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 절 실버세대위원회

제 54 조 (구성 및 기능) ① 실버세대의 정치참여와 실버정책 수립, 기타 실버세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버세대위원회를 둔다.

- ② 실버세대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버세대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부위원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실버세대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5 절 여성위원회

제 55 조 (구성 및 기능) ① 여성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 ②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

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여성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 ④ 여성위원장은 제19조제17호의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여성위원회는 제19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여성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6 절 청년위원회

- 제 56 조 (구성 및 기능)**
- ① 청년층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위원회를 둔다.
 - ② 청년위원회는 청년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청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 ④ 청년위원장은 제19조제18호의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청년위원회는 제19조제18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청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7 절 디지털정당위원회

- 제 57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디지털정당 구현 및 인터넷에서의 당 지지세 확산, 네티즌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당위원회를 둔다.
- ② 디지털정당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디지털정당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부위원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디지털정당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8 절 장애인위원회

- 제 58 조 (구성 및 기능)** ① 장애인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 및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위원회를 둔다.
- ②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장애인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 ④ 장애인위원회위원장은 제19조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장애인위원회는 제19조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장애인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9 절 홍보위원회

- 제 59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둔다.
- ② 홍보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홍보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홍보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0 절 지방자치안전위원회

- 제 60 조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하여 지방자치안전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안전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

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1 절 대외협력위원회

제 61 조 (구성 및 기능) ①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대외협력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

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외협력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대외협력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2 절 재외국민위원회

제 62 조 (구성 및 기능) ① 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 지지도

확산과 해외 교민단체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위원회를 둔다.

②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외국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최고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재외국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3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국제교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

제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

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제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국제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4 절 노동위원회

- 제 64 조 (구성 및 기능)** 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 각종 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등을 위해 노동위원회를 둔다.
- ② 노동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노동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5 절 통일위원회

- 제 65 조 (구성 및 기능)** ① 남북통일에 대한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통일위원회를 둔다.
- ② 통일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통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통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6 절 재능나눔위원회

- 제 66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대국민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당원들이 가진 재능을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재능나눔위원회를 둔다.
- ② 재능나눔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능나눔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재능나눔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7 절 재해대책위원회

- 제 67 조 (구성 및 기능)** ①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예방,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
- ② 재해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해대책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재해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8 절 중앙연수원

- 제 68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을 위하여 중앙연수원을 둔다.
- ② 중앙연수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중앙연수원에 중앙연수위원회를 둔다.
- ④ 중앙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9 절 정책연구소 및 특별기구

- 제 69 조 (기타 특별기구) ①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 ③ 대표최고위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구성·운영한다.
- ④ 대표최고위원은 여성·청년 등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내 정치교육과정을 두며, 여성이 50%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 ⑤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원의 사회봉사활동

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⑥ 위 제3항 내지 제4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0 절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제 70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무 전반에 관한 당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②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1 절 시·도당

제 71 조 (시·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지역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3. 관할 당소속 국회의원
4. 당소속 시·도지사
5.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6.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중앙위원회 시·도당 주요 임원
9. 당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0.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1. 직역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12.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 시·도당대회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2 조 (시·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대의원의 선출
2. 제19조제15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3. 시·도당 위원장 선출
4. 공직후보자(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5.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소속 국회의원
3. 당소속 시·도지사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지역대표 전국위원
6.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
9. 시·도의회 대표의원
10. 당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③ 시·도당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3 조 (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정기 전당대회 이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단,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 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장, 부의장 이외에 다른 당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⑤ 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4 조 (당원협의회) ①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당원협의회는 원활한 운영과 지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 ③ 대표최고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 ④ 당원협의회의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장 원내기구

제 32 절 의원총회

제 75 조 (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 76 조 (의원의 의무와 지위)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 77 조 (기능) ①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2.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제23조제3항제4호에 의한 상임전국위원의 선임
4.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5.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6. 국회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7.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8.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③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8 조 (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

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 79 조 (소집) ① 의원총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

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요청시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

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 80 조 (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

표 또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10인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

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

다.

제 81 조 (의결정족수)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과반수 또는 과반수를 초과하는 찬성표를 얻은 것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

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

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⑤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

한다.

제 82 조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② 제81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 33 절 원내대표

제 83 조 (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 84 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5 조 (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5.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② 제1항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

제 86 조 (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7 조 (원내대책위원회) ① 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원내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

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6조

(원내부대표 등)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원내대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내기획실 및 필요부서를 둔다.

⑥ 원내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4 절 정책위원회

제 88 조 (구성)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의

원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⑤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원내대책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89 조 (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민원업무의 처리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원내대책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0 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당정협의업무 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사퇴한다.

- ④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⑤ 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간사가 원칙적으로 겸임하며,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⑥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5 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 제 91 조 (후보자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투표결과와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당선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80%,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 ③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

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④ 제2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 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2 조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등)

-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유권자수의 0.5%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 1. 대의원 선거인
 - 2. 당원 선거인
 - 3.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
- ② 당헌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항 제1호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8분의 2, 제2호는 8분의 3, 제3호는 8분의 3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선거인단은 각각 여성이 50%로 한다.
- ④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시·군 복합 당원협의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자치구나 시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지역의 경우 45세 미만

이 30% 이상,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지역은 20% 이상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⑥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해외거주 선거인을 추가할 수 있다.
- ⑦ 국민참여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3 조 (후보자의 자격) ①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
야 한다. 단, 제113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 94 조 (후보자의 선출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

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5 조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 ① 대통령선거 240일전부터 출마 회

망자를 위한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를 운영한다.

②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 회

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

다.

제 96 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

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 6 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97 조 (후보자 추천) 당의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국민참여선거

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한다. 구체적인 추천관

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98 조 (국민공천배심원단) 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후보자추천을 위

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둔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

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

이 임명하며, 시·도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

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

의 장 후보자중 다음 1호와 2호를,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중 다음 3호를 각각

심의대상으로 한다.

1. 국회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2.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3.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

보자

- ⑤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9 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 ②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추천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0 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중앙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

에서 지역 및 직역별로 공모를 실시한 후,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 ②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당해 선거의 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전략지역에 30%를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그 순서는 성별 교차식으로 한다.
-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대상자 선정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1 조 (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①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 ② 시·도지사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은 제91조 내지 제92조의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인단은 시·도 선거인단으로 하며, 유권자의 0.1%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선추천지

역으로 선정한 시·도지사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2 조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

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다만,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 ②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 ③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위원회의원 후보

에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 ④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 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⑦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같음할 수 있다.
- ⑧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3 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단, 광역단체장은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를 원칙으로 하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4 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제99조(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101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제102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장 회 계

제 105 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106 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감사 때마다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국회의원 1인을 포함하는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당내 및 당외 각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상임전국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 8 장 당헌개정

제 107 조 (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 108 조 (의결절차) ① 당헌개정안은 대표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9 조 (개정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대표최고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110 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입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1 조 (법정부채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채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법정부채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2 조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
- ④ 선거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3 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대표최고위원이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기능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 또는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

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09. 7. 29)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09년 7월 27일 개최한 제7차 전국위원

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시행이전에 선출된 대표최고위원, 최

고위원, 원내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은 구 당헌에 보장된 임기동

안 이 당헌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당헌에 의한 최초의 전국위원회는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출이

종료(신설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소집한다.

③ 이 당헌에 의한 당규의 제.개정은 최초 소집되는 전국위원회에서 의

장이 선출 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한다.

부 칙 (2010. 2. 19)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10년 2월 19일 제9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시행 이전에 선출된 당직자는 구 당

헌에 의한 임기가 보장된다.

② 당헌 제12조(선출직 위원장 연임 제한)는 구 당헌에 의해 선출된 위원

장의 임기만료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9. 30)

이 당헌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10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1. 7. 2)

이 당헌은 2011년 7월 2일 개최되는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1. 7. 4)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11년 7월 4일 개최되는 제12차 전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12차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은 이 당헌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12. 19)

이 당헌은 2011년 12월 19일 개최되는 제14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 2. 13)

이 당헌은 2012년 2월 13일 개최되는 제15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당헌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 규



당원규정

【 2005년 11월 28일 제정 】

개정	2005.12.22	2007.9.11
	2010.2.26	2012.2.9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의무,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당원)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책임당원수의 15% 이내로 하고, 제4호에 규정된 당원은 그 중 50%를 넘을 수 없다.

1.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당원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당원

4. 당에 공헌이 큰 당원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 3 조 (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① 당원은 당헌 제6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②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당이 허가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제 3 조의 2 (국회의원.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당직자 등의 의무)

① 최고위원,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선출 또는 임명 후, 재산 공개의 의무를 가진다.

② 최고위원,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은 매년 당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

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제명·탈당자의 재입당) 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자격심사)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 ②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제 7 조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4.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5.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제 8 조 (이의신청) ① 시.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은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이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제 9 조 (입당확정)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월·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입당이 확정되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에게는 당원증을 교부한다.

제 10 조 (통보)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 ④ 중앙당 및 시.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한다.

제 12 조 (전적) ①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3 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지방자치안전위원장,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 및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1인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당 조직국장을 간사로 한다.

③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 4인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 칙 (2007. 9. 1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1일 제1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책임당원에 관한 특례)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책임당원은 2006년 5월 31일까지는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한다.

제 3 조 (서식)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은 필요에 따라 중앙당이 정하는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 2. 9)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 개최되는 제15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당원서

[별지 제2호 서식] 탈당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탈당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전적원

입 당 원 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실제 생일	월 일(양음)
	(한자)				
주소					
직업			전 화	자택	
주요 경력				직장	
				휴대전화	
				E-mail	

본인은 새누리당에 입당하고자 이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인인

추천인인

심사	사무처장	위원장
년 월 일 입당확정		

새누리당 ()시.도당 귀중

별제 제2호 서식

탈 당 신고서

성명	한글		연락처	자택	
	한자			직장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소속				E-mail	
당직			주소	우편번호(-)	
입당일자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귀당을 탈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새 누 리 당 귀중

※ 신고인의 연락처는 당적말소를 위해 사용되며, 탈당증명서는 직접교부 및 상기의 주소지로 송부하오니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제 제3호 서식

탈 당 증 명 서

제 - 호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호	
	한 자			
주 소				
탈당년월일				

상기인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새누리당 () 시.도당위원장

별제 제4호 서식

전 적 원

제 -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소속 시.도당		당 직	
전적신청 시.도당		입당일자	

전 주소	
현 주소	
<p>위와 같이 전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신교인 : 인</p> <p>새누리당 () 시.도당 귀중</p>	

당비규정

【 1997년 12월 29일 제정 】

개정	1998.4.15	1998.11.26
	1999.9.1	2002.5.6

2003. 6. 19	2004. 8. 26
2005. 1. 18	2005. 6. 16
2005. 12. 1	2006. 9. 26
2007. 10. 12	2008. 9. 30
2010. 2. 26	2010. 9. 30
2014. 2. 2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① 당원은 납부기준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직책당비 납부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복당직자인 경우는 다액납부기준에 의거 납부토록 하며, 취약지역 등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책임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규정 제2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

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그 사실을 체납 당직자에게 고지하고,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경고하며, 4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제 4 조 (특별당비)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납부절차) ①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치나 1년치 등을 선납할 수 있다. 단, 과거 당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한다.

②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다만, 중앙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중앙 공직자 등은 중앙당에 납부한다.

③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지역의 당비를 매월 납부상황보고서와 함께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

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비 환급) 중앙사무처는 시·도당으로부터 납부 받은 당비의 70%를 해당 시·도당에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 납부대상자의 당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당비 징수 및 관리)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재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

	◦국책자문위원, 부대변인	月 5萬원 이상
	◦중앙위 부의장·분과위원장	月 10萬원이상
	◦중앙위 시·도당 연합회장	月 10萬원이상
	◦중앙위 상임고문, 고문·자문·지도위원·총간사	月 5萬원이상
	◦중앙위 분과 부위원장, 시·도당 연합회 부회장	月 3萬원이상
	◦중앙위 분과 간사, 시·도당연합회 사무국장, 국회의원선거구 지회장	月 2萬원이상
	◦중앙위원, 국회의원선거구 지회 부회장	月 1萬원이상
	◦국회의원선거구 지회 간사 및 위원	月 5千원이상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月 5萬원이상
	◦중앙여성위원회 고문·자문위원	月 3萬원이상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	月 1萬원이상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月 3萬원이상
	◦미래세대위원회 위원	月 1萬원이상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月 1萬원이상
	◦대학생위원회 위원	月 5千원이상
	◦유급당원	月 給與의 1.5% 이상
구분	대 상	직책당비 납부기준
지 방 당	◦시·도당 위원장	月 50萬원이상(院內) 月 30萬원이상(院外)
	◦시·도당 부위원장	月 5萬원 이상
	◦시·도당 고문·자문위원·대변인	月 3萬원 이상
	◦시·도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月 5萬원이상
	◦시·도당 각종 위원회 부위원장	月 3萬원이상
	◦시·도당 각종 위원회 위원	月 1萬원이상
	◦시·도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月 2萬원이상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月 10萬원이상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月 5千원이상

【 1998년 5월 7일 제정 】

개정	1998.11.26	2002.2.27
	2002.5.6	2003.4.25
	2004.6.10	2010.2.26
	2010.9.30	2011.6.30
	2012.2.9	
전면개정	2005.12.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당대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전당대회 대의원

제 2 조 (대의원 정수) ① 전당대회 대의원은 10,00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최고위원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당소속 국회의원
5. 당소속 시·도지사
6. 전국위원회 위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8.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9. 국책자문위원회 위원
10. 재정위원
11.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12. 당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13.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14.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5. 새누리당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5인
16.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10인
17.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5,000인 이내
18.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

② 제1항제8호의 범위는 중앙위원회 의장, 부의장, 상임고문, 고문, 분과위원장, 지도위원, 자문위원, 총간사, 시·도당연합회장, 분과위원회 간사,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0인, 시·도당연합회 부회장 각 3인 및 시·도당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제17호의 대의원은 당원협의회별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국 단위 공직선거의 유권자수 0.01%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과 당원협의회별로 특수직능을 대표하는 당원, 디지털 당원을 우선적으로 고

려해 추천하는 2인 및 장애인 당원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유권자 수 0.01%에 해당하는 당원의 경우 유권자수가 최대 유권자수 국회의원선거구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국회의원선거구의 경우에는 최대 유권자수 국회의원선거구 대의원 수의 2분의 1로 하며,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한 국회의원선거구의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제1항제18호의 대의원은 책임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 1인을 포함하여 각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3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제청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300인 이내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 시까지로 한다.

⑥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중 5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⑦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중 20%이상 40%이하는 만 45세 미만 당원으로 구성한다.

⑧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명부는 전당대회 개최일 전 14일까지 확정하며, 그 정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결원) 전당대회 대의원이 사망, 탈당, 당직사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충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의결된 당원은 당원협의회의 추천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 전일까지 재의결한다.
2. 제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당원은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 전일까지 재추천한다.

제 4 조 (대의원 당비납부의무)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전당대회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5 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 6 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임시전당대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대회의장이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최고위원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 7 조 (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전당대회 의장단

제 8 조 (임원) ① 전당대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제 9 조 (임기)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로 한다.

제 10 조 (권한대행) 전당대회 의장의 권한대행은 전국위원회규정 제5 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제 11 조 (설치) 전당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 1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제 1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당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당헌개정안의 정리 및 관련당규 제정.개정안 심의
3. 강령.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을 위한 개정안 작성
4. 최고위원회의 및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전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 14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약간인을 두며,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사준비분과위원회

가. 전당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나. 전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준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다른 분과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

가. 당헌개정안 정리 및 관련당규 제정·개정안 심의

3. 정강정책개정분과위원회

가. 강령.기본정책의 개정안 작성

- ④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내.외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위촉한다.
- ⑤ 각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는 제14조(소집 및 의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실무지원부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7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12. 21)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1일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

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1. 6. 30)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 개최되는 제2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

결 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 2. 9)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 개최되는 제15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국위원회규정

【 2005년 11월 24일 제정 】

개정 2010.2.26

2014.2.2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의 정수는 1,00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최고위원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포함)
3. 당소속 국회부의장
4.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5. 상임고문
6.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7. 중앙위원회 의장
8. 시·도당 위원장
9. 당소속 국회의원
10. 당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1. 중앙당 각종위원회 위원장
12.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3. 국책자문위원회 임원 20인 이내
14. 재정위원회 임원 20인 이내

15. 시·도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105인
 16. 중앙위원회 선출 전국위원 50인 이내
 17.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30인 이내
 18. 전국청년대회 선출 전국위원 30인 이내
 19. 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위원 30인 이내
 20. 직능과 계층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한 전국위원 20인
 21.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22. 당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23. 당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24. 당소속 자치구·시·군의의회 의장
- ② 제1항제15호의 정수는 직전 전국단위 선거의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시·도별 정수는 별지 제1호와 같다.
 - ③ 제1항제20호의 전국위원 선임시 여성을 50%로 한다.
 - ④ 제1항제23호의 당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은 각 시·도의회의 당소속 원내총무로 한다. 단, 원내총무가 없는 시·도의회의 경우 해당 시·도의회 당소속 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 4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최고위원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81조를 준용한다.

제 5 조 (의장단) ① 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전국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 2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
- ③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 개최되는 전국위원회에서는 전국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의장과 부의장 전원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최고위원은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겸직금지)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각 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표최고위원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사무총장 등 중앙당 당무집행기구 산하 당직
5. 중앙위원회의장

제 7 조 (의안)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장이 부의장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실무지원부서)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 칙 (2005. 11. 24)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4일 제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별지 1호 】

1. 시·도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정수 산출 기준

전국 유권자수 대비 시·도 유권자 구성비	전국위원수
20% 이상	15
15% 이상~20% 미만	13
10% 이상~15% 미만	11
7% 이상~10% 미만	9
5% 이상~7% 미만	7
3% 이상~5% 미만	5
3% 미만	3

2. 시·도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정수 산출 기준 (제18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수

기준)

시.도	유권자수	구성비	시.도선출 전국위원수
서울	8,379,979	20.7	15
부산	2,909,523	7.2	9
대구	1,989,472	4.9	5
인천	2,240,152	5.5	7
광주	1,117,434	2.8	3
대전	1,181,820	2.9	3
울산	885,468	2.2	3
세종	87,665	0.2	3
경기	9,358,357	23.1	15
강원	1,235,187	3.1	5
충북	1,234,225	3.0	5
충남	1,601,006	4.0	5
전북	1,482,705	3.7	5
전남	1,528,452	3.8	5
경북	2,181,817	5.4	7
경남	2,603,355	6.4	7
제주	448,024	1.1	3
합계	40,464,641	100	105

상임전국위원회규정

【 2005년 11월 24일 제정 】

개정 2005.12.22
 2010.2.26
 2014.2.2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임전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의 정수는 10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
2. 당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3. 시.도당 위원장
4.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5.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회의 선임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6. 중앙위원회 의장 및 중앙위원회 선출 전국위원 4인
7.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5인
8. 전국청년대회 선출 전국위원 3인
9. 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위원 3인

10. 당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1.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전국 대표의원 1인

② 제1항제4호의 위원은 당소속 국회의원 수의 10% 이내에서 선임하
되, 3선 이상의 국회의원 중 국회직이나 당헌상의 주요 당직을 맡
지 아니한 사람을 선임한다.

③ 제1항제5호의 위원은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수의 10% 이내
에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임한다.

1.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수 대비 당소속 국회의원의 수가
30% 미만인 취약지역의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각 1인

2.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수 대비 당소속 국회의원의 수가
30%이상 50% 미만인 약세지역의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각
2인

④ 제1항제10호의 시.도의회 대표의원은 각 시.도의회의 당소속 원내
총무로 한다. 단, 원내총무가 없는 시.도의회의 경우 해당 시.도의
회 당소속 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다.

⑤ 제1항제11호의 위원은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선임한
다.

⑥ 제1항제4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당
해 기구에서 후임자를 선출 또는 선임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는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 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기본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당대회외의 소집 요구
4.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5.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결
6.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7. 전국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8.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제 4 조 (의장)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위원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으로 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국위원회규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의안)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② 의안은 의장이 부의장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당직자의 출석 및 발언) 다음 각 호의 당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의장은 출석한 당직자에게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대표최고위원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포함)
3.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제 7 조 (소집 및 의사) ① 정기회의는 월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단의 의결로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조제9호의 당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한다.

- ②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81조를 준용한다.

제 8 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부 칙 (2005. 12. 22)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2일 제8차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출규정

【 2004년 6 월 10일 제정 】

개정	2007.5.15
	2010.2.26
	2011.6.30
	2014.2.25
전면개정	2005.12. 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7조(대표최고위원의 선출) 및 제28조(선출직 최고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거(이하 ‘선거’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당기구’ 라 함은 당헌 제3장(당기구)에 규정된 당기구 및 그 당기구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직선거법의 용어를 준용한다.

제 3 조 (선거사무협조) 당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① 당기구는 당헌 제27조(대표최고위원의 선출)제1항이 규정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 이라 한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단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5 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대표최고위

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

관리위원과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기타 당원이 아닌 자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

.개표참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제9장(별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

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8 조 (선거권) ① 당원으로서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당헌 제13조(구성)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 8 조의 2 (선거인단)

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책임당원 선거인(이하 ‘책임당원 선거인’ 이라 한

다)

3.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일반당원 선거인(이하 ‘일반당원 선거인’ 이라 한

다)

4.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10,000인 이내의 청년 선거인(이하 ‘청년 선거인’ 이라 한다)

② 책임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책임당

원 전원으로 한다.

③ 일반당원 선거인은 각 당원협의회별 유권자수의 0.1% 이내로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최소 유권자수를 갖는 당원협의회와 최대 유권자수를 갖는 당원협의회의 선거인단 수 비율을 1:2로 하여, 당원협의회별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국단위 공직선거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협의회별 50인 이내의 당원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추첨 당원

④ 당원협의회별로 배정된 일반당원 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 단위의 기초단체 지역은 만 45세 미만인 30% 이상, 군 단위의 기초단체지역은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일반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당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⑥ 청년 선거인은 중앙당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로 구성하되, 선거일을 기준으로 당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만 40세 미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최소 유권자수를 갖는 당원협의회와 최대 유권자수를 갖는 당원협의회의 선거인단 수 비율을 1:2로 하여, 당원협의회별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국단위 공직선거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⑦ 청년 선거인 중 50%는 여성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청년 선거인 공모결과 그 수가 당원협의회별 배정된 선거인단 정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⑨ 선거인단의 세부적인 비율 및 배분방식, 정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9 조 (피선거권)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 10 조 (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의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자

제 11 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의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2 조 (설치 및 구성) ① 선거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 후보자 등록공고 및 기타 등록관련 사무
3.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에 등록상황 보고
4. 선거인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6. 당선인 결정 공고 및 통지
7.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단속, 시정조치 등 후보자 와 선거인단 및 당원에 대한 제재
8.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9.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제 14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 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제 1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회의결과의 공개 등)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8 조 (선거공보)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 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 4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 19 조 (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12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 20 조 (선거일) 선거일은 선거일전 14일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 장 선거인단명부

제 21 조 (명부작성) ① 위원장은 선거인단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선

거인단명부 작성기준일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단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선거인단명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2 조 (명부열람) ① 위원장은 선거인단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일 이상(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선거

인단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열람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명부열람 일시와 장소를 공

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명부의 정정 등) ① 위원장은 열람기간을 포함하여 열람기

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선거인단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단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

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단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

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명부의 확정) ① 선거인단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5 조 (명부 사본의 교부) ① 위원회는 선거인단명부가 확정된 경

우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후보자는 교부받은 사본을 선

거기간 만료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는 교부받은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 6 장 후보자

제 26 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당일에 위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0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
2. 이력서
3. 당적확인서
4. 당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5. 주민등록등본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⑤ 후보자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7 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6조(후보자 등록)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3.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기탁금)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된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탁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장 선거운동

제 31 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당원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 32 조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 33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원이 아닌 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4.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제 35 조 (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속한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실은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선거홍보물)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각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제출 수량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선전벽보

2. 소형인쇄물

- ② 홍보물의 첩부·발송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홍보물의 게재내용·규격·제출·첩부·발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위원회는 선거안내를 위해 현수막 게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7 조 (합동연설회) ① 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합동연설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⑤ 합동연설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8 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① 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TV,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활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④ 대담.토론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9 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향응.교통 편의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선거인에게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3.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행위
5.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당원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7.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8.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9.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10. 제37조(합동연설회)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회 개최 행위

제 8 장 선 출

제 40 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투표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및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1 조 (투.개표 등) ① 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 기타 투.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2 조 (개표장의 질서유지) ① 개표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

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

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3 조 (당선인 결정) ① 대표최고위원 당선인 결정은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7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여 최다득표한 자

를 대표최고위원으로 결정하며, 동수의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선거인단 투표결과, 여론조사결과 순으로 최다득표자를 대표최고위

원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선거

일 전일 실시하며, 결과는 전당대회장에서 발표하고, 총 득표 결과

에 제1항의 비율을 반영하여 합산한다.

③ 최고위원 당선인 결정은 대표최고위원선거에서 2위 내지 5위 득표

자로 한다. 다만,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

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④ 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잔여정원은 전국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44 조 (당선인 결정 공고.통지 등) 제43조(당선인결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장 별 칙

제 45 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2. 경고
3. 윤리위원회 회부

제 46 조 (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가 제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중앙당 및 시.도당(이하

“관련 당부”라 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9조(불복신청)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제 47 조 (경고) ① 위원회가 제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관련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9조(불복신청)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② 경고를 받은 당사자가 후보자인 경우 그 후보자는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합동연설회 또는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8 조 (윤리위원회 회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 (불복신청) ① 제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 10 장 보 칙

제 50 조 (지원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반업무의 지원을 위한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 51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2 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출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7년 5월 15일 제13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1. 6. 30)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 개최되는 제2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표최고위원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 2005년 12월 1일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표최고위원의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자문기관

제 2 조 (구성) 대표최고위원은 당무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3 조 (기능) 상임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진다.

1. 당무에 관한 대표최고위원에 대한 자문
2. 주요 현안에 관한 여론 전달 및 의견개진

제 4 조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 등) ①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 회

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 조 (회의소집) 상임고문회의는 대표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고문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최고위원이 소집한다.

제 3 장 보좌기관

제 6 조 (구성) 대표최고위원은 대표최고위원의 보좌기관으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 및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제 7 조 (대표최고위원 비서실) ①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은 비서업무 및 기타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표최고위원비서실장은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대표최고위원의 명을 받아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③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에 필요한 사무처당직자를 둔다.

제 8 조 (특별보좌역 등) ① 대표최고위원은 정책 자문 및 당무보좌를 위하여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역 등은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부 칙 (2005. 12. 1)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최고위원회의규정

【 2005년 11월 24일 제정 】

개정 2010. 2. 26 2011. 6. 30
 2014. 2. 2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최고위원
2. 원내대표
3. 당헌 제28조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4인
4.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

인

5. 정책위원회 의장

- ② 제1항제4호의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취약지역과 외부영입 인사를 우선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한다.
- ③ 최고위원 중 1인은 재외국민 정책을 개발하고, 당과 재외국민간의 소통을 주도하는 재외국민 담당 최고위원을 겸직한다.
- ④ 재외국민 담당 최고위원은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 중 1인을 임명한다.

제 3 조 (기능) 최고위원회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 변경 요구
- 2.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 3. 의원총회 소집 요구
- 4.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의결
- 5.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 6.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 7. 당헌 제19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전국위원의 선임
- 8.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 9.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 4 조 (의장) ①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되고, 대표 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헌 제30조(권한대행)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최고위원은 제3조제4호의 주요 당직자 임명에 있어 인사추천권을 가진다.

제 5 조 (의안) ① 최고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대표최고위원이 상정한다.

③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회의 1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출석 및 발언) 최고위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

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 ①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의장이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8 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81조를 준

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대표최고위원이 결정권을 가진

다.

제 9 조 (회의록) ① 최고위원회의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하고 영구 보관한

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부 칙 (2005. 11. 24)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4일 제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1. 6. 30)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 개최되는 제2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처규정

【 1997년 12월 29일 제정 】

개정	1998. 3. 2	1998. 5. 7
	1998. 11. 26	1999. 3. 5
	1999. 10. 13	2000. 7. 12
	2001. 4. 20	2001. 12. 5
	2002. 5. 6	2003. 6. 19
	2006. 9. 26	2007. 4. 3
	2008. 1. 17	2009. 7. 27
	2010. 2. 26	2010. 9. 30
	2014. 2. 25	
	전면개정	2004. 7. 2
2005. 6. 30		2005. 7. 7
		2005. 11. 2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의 지원을 위한 사무처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무집행기구

제 1 절 중앙사무처

제 2 조 (중앙사무처) ① 중앙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최고위원의 명을 받아 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지원·인사를 총괄하며, 시·도당 사무처를 관장한다.

③ 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이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 (부서) 중앙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기획조정국
2. 총무국
3. 조직국
4. 여성국
5. 직능국
6. 청년국
7. 재외국민국
8. 국제국
9. 연수국
10. 사무총장 비서실

제 4 조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국에 기획팀, 심사팀을 둔다.

① 기획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무기획 및 당 운영계획 수립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기본계획 수립
3. 전당대회, 전국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상임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의 등 주요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당헌·당규 및 정당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② 심사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윤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권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재영입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책자문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앙당 당무감사에 관한 사항
7. 당무심사 분석 및 평가

제 5 조 (총무국) 총무국에 총무팀, 재정팀을 둔다.

① 총무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당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
2.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당인 및 문서관리·문서수발
4. 당 영조물 및 자산관리
5. 위원회 등 각 기구에 대한 서무지원
6. 사무처당직자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해대책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재정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당 재정운용 기본계획 수립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자금관리
4.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련 사항
5. 계약 및 구매에 관한 사항
6. 재정위원회.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지원
8. 구입(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제 6 조 (조직국) 조직국에 조직1팀과 조직2팀을 둔다.

① 조직1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 및 참석에 관한 사항
3. 시·도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당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도당 당무활동 분석, 평가 및 당무점검
7. 당원협의회 당무활동 분석, 평가 및 당무점검
8. 각종 선거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앙당직자 지역순방 및 서한발송에 관한 사항

10. 당적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 조직2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관련 활동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평가·지원, 교육집회에 관한 사항
4. 지방의원의 활동 평가·지원, 교육집회에 관한 사항
5. 당원에 대한 표창 상신 및 징계회부에 관한 사항

제 7 조 (여성국) 여성국에 여성1팀과 여성2팀을 둔다.

① 여성1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및 교육
3. 여성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급 공직선거 여성후보자 지원활동
5. 여성정치발전기금 사용계획 수립 및 집행
6. 기타 여성관련 사항

② 여성2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상의 여성조직 활동지원
2. 당 여성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3. 여성직능단체 및 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여론수렴
4. 여성정책 및 홍보에 관한 활동
5. 20.30대 여성유권자, 근로여성 및 여대생 관련 활동

6. 차세대여성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결혼이주여성, 미혼모 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 지원 활동

제 8 조 (직능국) 직능국에 직능1팀과 직능2팀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직능1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직능2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버세대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종교 및 기타 직능활동 단체 관련 업무 지원

제 9 조 (청년국) 청년국에 청년팀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활동 기본계획 수립
2. 청년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앙 및 시·도당 청년활동 지원
4. 외부 청년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5. 20대 청년 유권자 및 대학생 관련 활동
6. 미래세대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정치지도자 육성 및 교육
8. 청년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9. 사이버상의 청년활동 지원

제 10 조 (재외국민국) 재외국민국에 재외국민팀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활동 기본계획 수립
2. 재외국민 조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외국민 관련 정책 및 홍보에 관한 활동
4. 재외국민 보호 및 교류활동
5. 해외교민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여론수렴
6. 재외국민위원회 활동지원

제 11 조 (국제국) 국제국에 국제팀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국 정당 및 국제정당협의기구 교류활동
2. 국제 민간단체와의 교류 협력
3. 주요당직자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결과의 수집·관리
4. 주한 외교사절단 및 외신사와의 교류협력 활동
5. 주요 외교현안 및 외신보도 분석
6. 대외홍보 활동
7. 국제위원회 활동지원
8. 당 외교의전 지원

제 12 조 (연수국) 연수국에 연수1팀과 연수2팀을 둔다.

① 연수1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중앙연수위원회 활동 지원
3. 연수결과 평가 및 분석

② 연수2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 교과과정 연구 및 개발
2. 강사섭외 및 교수진 관리
3. 온라인 강의 및 연수개발.관리

제 13 조 (사무총장 비서실) 사무총장 비서실은 비서업무 및 기타 사무총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절 전략기획본부

제 14 조 (전략기획본부) ① 전략기획본부에 전략기획본부장과 이를 보좌하는 기획위원장, 국민공감위원장을 둔다.

② 전략기획본부장은 대표최고위원의 명을 받아 주요정치현안 및 전략을 관장한다.

③ 전략기획본부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부서) 전략기획본부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전략기획국
2. 정국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상근전략기획위원

제 16 조 (전략기획국) 전략기획국에 정세분석팀, 정보관리팀을 둔다.

① 정세분석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 현안 분석 및 대응전략의 수립
2. 긴급현안당무에 관한 대책 수립
3. 여론동향 파악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보관리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정보의 분석 및 판단

제 3 절 홍보기획본부

제 17 조 (홍보기획본부장) ① 홍보기획본부에 홍보기획본부장과 이를 보좌하는 부분부장, 대변인을 둔다.

② 홍보기획본부장은 대표최고위원의 명을 받아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의 홍보를 관장한다.

③ 홍보기획본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성명·논평 등 각종 발표문 및 대 언론 활동을 관장한다.

② 대변인을 보좌하는 필요한 수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③ 부대변인은 대변인의 추천과 홍보기획본부장의 제청으로 최고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부대변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부대변인의 활동 평

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 19 조 (부서) 홍보기획본부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홍보국
2. 뉴미디어국
3. 대변인행정실

제 20 조 (홍보국) 홍보국에 홍보팀, 디지털팀, 방송팀을 둔다.

① 홍보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홍보논리 개발 및 전파
3. 홍보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광고관련 업무
5. 각종 공직선거 홍보대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당보발간 및 배포

② 디지털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당 공식 온라인매체 관리·운영
3. 시·도당 온라인 홍보활동 지원
4. 온라인 홍보 관련 대외협력 업무

③ 방송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업무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2. 당 주요행사 영상, 사진 취재

3. 당무관련 영상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등 영상 제작 및 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선거 영상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송, 사진 관련 업무
7. 방송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제 21 조 (뉴미디어국) 뉴미디어국에 기획팀, 소통팀을 둔다.

① 기획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SNS 및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방안 기획
2. SNS 및 빅데이터 활동 평가 및 지원
3. 소셜네트워크 및 빅데이터 관련 연구
4. 디지털정당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소통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내 소셜네트워크 확산 및 협조
2. 당외 소셜네트워크 유대 강화
3. SNS 여론 동향 파악
4. SNS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제 22 조 (대변인행정실) 대변인행정실에 운영팀, 자료분석팀, 미디어 팀을 둔다.

① 운영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실 업무전반에 관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당 주요행사 취재활동 지원

3. 주요당직자 및 대변인단 대외활동 지원
4. 대표최고위원 일정 관련 보도자료 및 각종 회의 등의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언론관련 사항

② 자료분석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명, 논평 등 작성
2. 주요 현안 및 이슈 등 관련 각종 자료 분석 및 관리

③ 미디어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방송토론 및 방송연설 지원
2. 방송 모니터
3. 미디어 대응전략 수립
4. 미디어 관련 대외협력 업무

제 23 조 (국.실.팀) ① 각 국.실.팀에는 국.실.팀장을 두고 국.실.팀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국.실.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각 국.실.팀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팀장.선임팀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 (특별부서)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및 홍보기획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정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부서를 둘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원내대책위원회 사무처

제 25 조 (원내대책위원회 사무처) 원내대책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해 원내기획실, 국회정책연구위원실, 원내대표 비서실을 둔다.

제 26 조 (원내기획실) 원내기획실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원내기획국
2. 원내행정국

제 27 조 (원내기획국) 원내기획국에 원내기획팀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운영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업무
2. 국회운영제도와 관련된 사항의 연구
3. 주요쟁점사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방안 수립
4.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국회관계법 연구

제 28 조 (원내행정국) 원내행정국에 운영팀, 의사팀을 둔다.

① 운영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내관련 주요행사계획 수립
2.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 활동지원

3. 원내대표단 활동지원
4. 의원친선협회 및 각종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② 의사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 본회의 활동지원
2. 국회 의사일정 등 의사진행에 관한 업무
3. 의안 심의에 관한 업무

제 29 조 (국회정책연구위원회) 국회정책연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정부질문 등 국회 본회의 정책지원
2.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3.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활동지원
4. 당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5. 법안·예산 등 주요정책 추진사항 점검
6. 기타 원내정책활동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제 30 조 (원내대표 비서실) 원내대표 비서실은 비서업무 및 기타 원내대표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31 조 (특별부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부서를 둘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 장 정책위원회 사무처

제 32 조 (정책위원회 사무처) 정책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해 정책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한 정책개발연구원으로 구성된 정책국, 민원국, 정책조정실 및 정책위원회 의장 비서실을 둔다.

제 33 조 (정책국) 정책국에 정책기획팀, 정책행정팀을 둔다.

① 정책기획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당 정책방향, 정책활동 계획 수립 및 정책활동 종합 조정
2.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및 주요 행사 지원
3. 정책위원회 인사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책활동 관련 사항

② 정책행정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홍보 계획 수립 및 정책홍보물 제작
2. 당 공약추진 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3. 당 홈페이지 중 정책 관련 부분 관리
4. 당 정책의 사이버 홍보활동 및 기타 사이버상 정책 관련 활동
5. 정책위원회 산하 위원회 회의, 정책활동지원 및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제 34 조 (민원국) 민원국에 민원팀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기획
2. 민원의 접수 및 처리

3. 집단민원 처리
4. 민원발굴 및 현지조사
5. 민원제도의 개선연구
6. 민원처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7. 민원상담
8. 인권법률상담
9. 신문고 설치.운영

제 35 조(수석전문위원 등) 각 정책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조정실을 둔다.

제 36 조 (정책위원회 의장 비서실) 정책위원회 의장 비서실은 비서업무 및 기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37 조 (특별부서) 정책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부서를 둘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5 장 시.도당 사무처

제 38 조 (시.도당 사무처)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시·도당 사무처의 소관업무와 소속 사무처당직자를 지휘·감

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부처장을 둘 수 있다.

제 39 조 (시·도당 사무처 기구) ① 시·도당 사무처에 각종 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시·도당 사무처에 둘 수 있는 팀의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도당 사무처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당 조직에 관한 사항
2. 시·도당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시·도당 디지털활동에 관한 사항
4. 시·도당 여성·청년활동에 관한 사항
5. 시·도당 직능활동에 관한 사항
6. 시·도당 정책·민원활동에 관한 사항
7. 각종 선거대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당 자산관리, 회계 관리
9.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2011. 12. 19)

이 규정은 2009년 7월 10일 개최한 제2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 2005년 11월 24일 제정 】

개정

2010.2.26

2010.9.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무처당직자의 정의) 사무처당직자라 함은 당무집행기구, 원

내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에 속한 당직자를 말한다.

제 3 조 (인사)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대표최고위원

이 임명한다.

제 2 장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제 4 조 (기능)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는 다음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당직자의 인사 관련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무처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 전환에 관한 사항
3. 사무처당직자의 포상, 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처당직자의 인사 관련 규칙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제 5 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원내수석부대표
 3. 정책위의장이 위임하는 정책위부의장 1인
 4. 제1사무부총장
 5. 제2사무부총장
 6. 사무처당직자 인사담당 실무부서의 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사무처당직자
-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은 사무총장이 제1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위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 6 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위임하는 정책위부의장 1인,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당직자 인사담당 실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 7 조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8 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제1항제7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9 조 (순환인사 원칙)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에 속한 사무처당직자는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무처당직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제 10 조 (의사진행의 독립) 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제 11 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 12 조 (협조의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평가, 사실조회 및 의견진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사무처당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 3 장 사무처당직자의 임면과 복무

제 14 조 (임면자격요건) 사무처당직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당원 중에 선 받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사람
2.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제 15 조 (여성할당) 사무처당직자의 신규 임용시 연도별기준으로 하여 여성을 30%이상 임용하도록 한다.

제 16 조 (교육)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정년) 사무처당직자의 정년은 55세로 한다.

제 18 조 (국회정책연구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또는 심의위원을 겸한다. 다만, 당무집행기구 및 국회운영전략을 전담하는 국회정책연구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 (파견) 정책연구소에 사무처당직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 20 조 (비밀엄수) 사무처당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 (승진) ① 사무처당직자의 승진은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정기승진 및 특별승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에 한하여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특별승진은 매년 사무처당직자의 인원수 대비 2%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기승진 및 특별승진은 2개 이상의 평가기준에 의한 승진 심사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정기승진은 매회 정기승진 심사대상자 총수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직급의 범위를 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 없이 재직기간만을 기준으로 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직급의 범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제4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성별, 연령,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22 조 (직제.상별) 사무처당직자의 직제.상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3 조 (특별규정)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는 당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24 조 (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1. 24)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4일 개최되는 제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앙위원회규정

【 1998년 1월 24일 제정 】

개정	1998.5.7	1998.11.26
	2000.7.12	2000.10.6
	2002.2.27	2002.5.6
	2003.6.19	2003.10.9
	2004.7.2	2005.2.17
	2010.2.26	2010.9.30
	2014.2.25	
전면개정	2005.11.24	2008.9.30

제 1 장 중앙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요건) 위원회는 당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사로 구성한다.

1.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2. 주요 직능사회 단체 연관 인사
3. 당 재정기여 인사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2.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3. 상임전국위원

4. 상임고문, 고문

5. 분과위원장

6. 지도위원, 자문위원, 총간사

7.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8. 시·도당 연합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9. 국회의원선거구별 지회장, 부회장, 간사

10. 분과위원회 위원

11. 시·도당 연합회 위원 및 지회 위원

②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임원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단,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10호의 위원은 인사위

원회의 결정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중앙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

최고위원이 임명한다. 단, 제8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 후 중앙위원회 의장이 추천한다.

제 4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계 직능조직과의 교류 활동

2. 주요 사회단체의 정책현안 수렴 및 정책 연계 활동

3. 당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건의

4. 국정 및 당면 현안에 대한 건의

제 5 조 (특별기구) ① 의장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제 6 조 (해임) ① 중앙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당의 발전과 단합을 저해하는 경우

2.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인사위원

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없이 해임할 수

있다.

제 2 장 의 장

제 7 조 (지위와 권한) ① 의장은 법적·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의장은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해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9 조 (권한대행) ① 의장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또는 상임전국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이 권한을 대행할 상임전국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전국위원 중 선거인단대회에서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자문 및 보좌기관) ① 의장의 자문기구로 각 30인 이내의 상임고문 및 고문과 각 50인 이내의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②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충간사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1 조 (구성) ① 위원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장

2. 수석부의장과 부의장 중 의장이 지명하는 2인

3. 상임전국위원
 4. 상임고문.고문 중 의장이 지명하는 각 1인
 5. 분과위원장
 6. 지도위원.자문위원.총간사 중 의장이 지명하는 각 1인
 7. 시.도당 연합회장 중 의장이 지명하는 1인
-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권한대행)에 따른 권한대행이 주재한다.

제 12 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2. 위원회 기금 예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3. 분과위원회와 시·도당 연합회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4. 기타 주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 ② 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 위임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 13 조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의장이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회의는 긴급현안이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의장 및 상임전국위원 선출

제 1 절 선거인단대회

제 15 조 (구성) ① 선거인단대회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위원과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회장으로 구성하되, 시·도당 연합회 부회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② 직책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거인단대회 대의원에서 제외한다.

제 16 조 (기능) ① 선거인단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의장 선출

2. 상임전국위원 선출

② 의장 및 상임전국위원 선출은 1인 2투표제로 동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소집) ① 선거인단대회는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임기 만료일전까지 개최하며,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일전

12일에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

원회의의 의결로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임기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

장이 선거인단대회를 소집한다.

제 18 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전산투표·우편투표·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투표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② 투표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19 조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상임전국위원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위원장

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

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20 조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의장·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선거인단대회와 후보자 등록 공고

3. 후보자 등록 관련 사무

4. 후보자 및 중앙위원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시정조치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9. 기타 선출관련 제업무

제 21 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의장 및 상임

전국위원의 선출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제 22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
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위임규정) 의장·상임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후보자

제 24 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및 상임전국위원 후보자 등록은 선거
일전 10일부터 2일간 접수한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당 소정 양식)
2. 이력서(당 소정 양식)
3. 서약서(당 소정 양식)
4. 범죄 경력 조회서 1통(벌금형 이상)
5.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6.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7. 기탁금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8. 증명사진 5매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등록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
다.

제 25 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 또는 사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선거운동

제 27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 28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①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원 5인만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29 조 (정견발표) ①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선거인단대회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② 정견발표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 30 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중앙위원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후보자의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 행위
4. 개별적 모임 개최 행위

제 5 절 당선자 결정

제 31 조 (의장) ① 의장은 선거인단대회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의장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의장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석부의장 또는 상임전국위원 중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의장 선출 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일전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32 조 (상임전국위원) ① 상임전국위원은 선거인단대회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1위 내지 4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동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한다.

②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3인과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4인 미만일 경우 잔여인원은 중앙위의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중에 여성이 없는 경우, 1위 내지 3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잔여 정원은 여성 중앙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⑤ 상임전국위원이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상임전국위원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1조제1항의 선거에서 차순위자가

그 직을 승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3 조 (당선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당선은 선거관리위원회회의 의결로 무효한다.

1. 후보자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의 경고 조치한 경우

제 5 장 전국위원 선출

제 34 조 (전국위원) 전국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상임전국위원 4인
2. 부의장 중 2인
3. 상임고문, 고문 중 각 1인
4. 분과위원장 중 13인
5. 지도위원·자문위원·총간사 중 각 1인
6. 시·도당 연합회 선출 17인

제 35 조 (선출) ① 제34조제1호는 당해 선거인단대회에서 선출한 상임전국위원을 당연직 전국위원으로 한다.

② 제34조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는 각급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제34조제4호는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제34조제6호는 시·도당 연합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시·도당 연합

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⑤ 전국위원이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전국위원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해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6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 37 조 (구성) 분과위원회는 제1분과협의회, 제2분과협의회, 제3분과협의회, 제4분과협의회, 제5분과협의회, 제6분과협회를 둔다.

제 38 조 (기능) 각 분과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분과협의회 : 법제사법, 행정자치, 재정경제 분야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협의회 : 통일·외교통상,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자원, 농림·해양수산,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4. 제4분과협의회 : 교육, 보건복지, 환경·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제5분과협의회 : 문화관광, 여성, 청년에 관한 사항

6. 제6분과협의회 : 종교에 관한 사항

제 39 조 (종류) 각 분과협의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협의회

가. 공익·법무분과위원회

나. 행정자치분과위원회

다. 재정금융분과위원회

2. 제2분과협의회

가. 평화통일분과위원회

나. 외교통상분과위원회

다. 국방안보분과위원회

라. 이북도민분과위원회

마. 해외동포위원회

3. 제3분과협의회

가. 농림축산분과위원회

나. 해양수산분과위원회

다. 정보과학분과위원회

라. 건설분과위원회

마. 교통분과위원회

바. 산업자원분과위원회

4. 제4분과협의회

가. 교육분과위원회

나. 보건위생분과위원회

다.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라. 환경분과위원회

마. 노동분과위원회

5. 제5분과협의회

가.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나. 체육분과위원회

다. 여성분과위원회

라. 청년분과위원회

6. 제6분과협의회

가. 불교분과위원회

나. 기독교분과위원회

다. 천주교분과위원회

제 40 조 (분과위원회별 그 소관 및 보고의무)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무분과위원회

가.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다. 법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분과위원회

가. 내무행정 및 지방자치·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항

나. 공공안전과 질서유지 등의 정책에 관한 사항

다.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정금융분과위원회

가. 경제 및 금융정책에 관한 사항

나. 조세 및 재정정책에 관한 사항

다.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분과위원회

가.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에 관한 사항

나. 통일교육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다. 이산가족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5. 외교통상분과위원회

가. 외교,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나.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국제 친선 및 정당 외교에 관한 사항

6. 국방안보분과위원회

가.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

나.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다.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7. 이북도민위원회

가. 이북도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나. 이북도민의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다. 대북정책에 관한 건의 및 북한 문제 연구에 관한 사항

8. 해외동포분과위원회

가. 해외동포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나. 해외동포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농림축산분과위원회

가. 식량증산 및 축산개발에 관한 사항

나. 산림개발에 관한 사항

다. 농수산물 유통 및 농외소득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분과위원회

가. 각종 해양정책에 관한 사항

나. 해양 환경 보전 및 해운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1. 정보과학분과위원회

가. 과학기술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라. 통신 및 정보산업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12. 건설분과위원회

가. 국토이용 및 건설에 관한 사항

나. 주택문제 및 도시인구에 관한 사항

다. 해외건설에 관한 사항

13. 교통분과위원회

가.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 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다. 육운·해운·항공에 관한 사항
- 14. 산업자원분과위원회
 - 가. 산업정책에 관한 사항
 - 나. 무역정책에 관한 사항
 - 다. 에너지 및 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
- 15. 교육분과위원회
 - 가.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나. 초·중·고·대학 등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
 - 다. 평생교육 및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 16. 보건위생분과위원회
 - 가.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 나.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
 - 다. 국민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
- 17.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가.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나.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장 및 장애자복지에 관한 사항
 - 다. 영세민 대책에 관한 사항
- 18. 환경분과위원회
 - 가.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 나. 환경권보장에 관한 사항
 - 다. 환경보존운동에 관한 사항

19. 노동분과위원회

- 가. 근로자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나. 안정적인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 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관한 사항

20. 문화관광분과위원회

- 가. 민족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 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 다. 관광산업에 관한 사항

21. 체육분과위원회

- 가. 체육정책에 관한 사항
- 나. 체육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다.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22. 여성분과위원회

- 가.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 나. 여성단체와의 교류 및 여권 신장에 관한 사항
- 다. 근로여성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23. 청년분과위원회

- 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
- 나. 지식 청년층 활동에 관한 사항
- 다. 청년단체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4. 불교분과위원회

- 가. 불교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불교단체와의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5. 기독교분과위원회

가. 기독교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기독교단체와의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6. 천주교분과위원회

가. 천주교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천주교단체와의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위원의 분과위 배정) 제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에 해당

하는 중앙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정은 활동 경력을 고려하여 의장

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2 조 (분과임원) ① 각 분과위원회는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

원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30

인, 위원 100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임원을 선임한다.

제 43 조 (임원의 기능) ①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분과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분과 임원은 당비 규정에 정한 기본 당비를 충실히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분과운영위원회) ①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처

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되는 분과운영위원회

를 둔다.

- ② 분과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상충되거나 중복될 때는 중앙위원회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분과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5 조 (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수의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한다.

제 7 장 시·도당 연합회

제 46 조 (구성) 중앙위원회 시·도당 연합회는 당해 시·도 직능연관

인사 중심의 모든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7 조 (임원) ① 각 시·도당 연합회에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한 부회장 약간인,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시·도당위원

장과 협의 후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② 회장은 시·도당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③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8 조 (지회) ① 각 시·도당 연합회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는 당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이 시·도당위원장과 협의 후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지회장 1인, 약간의 부회장,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49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정한다.

제 8 장 중앙위원회 인사위원회

제 50 조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장
2. 수석부의장
3. 상임전국위원 4인
4. 실무지원부서의 장

② 의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 51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제반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1. 중앙위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
2. 의장이 회부한 포상 또는 징계사항
3. 중앙위원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 52 조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③ 선거인단대회 30일 전부터 대회일까지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

제 53 조 (제척) 위원 중 회부안건과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54 조 (사퇴시한규정) 현직 중앙위원회 의장 및 상임전국위원이 재출마할 경우,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사퇴해야 한다.

부 칙 (2008. 9. 3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

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중앙위원의 임기는 의장 및 상임전국위원 선거인단대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윤리위원회규정

【 2005년 12월 5일 제정 】

개정 2006.9.26 2007.9.1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중앙당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시·도당에 시·도당 윤리위원
회를 둔다.

제 3 조 (위원의 신분보장) 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
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
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 (비밀엄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 5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2 장 중앙윤리위원회

제 1 절 구성 및 운영

제 6 조 (구성 등) ①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윤리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관을 윤리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7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
3. 당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기구에 대한 표창 심의.의결
4. 당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 8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대표최고위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 11 조 (조사) ① 위원회는 포상 또는 징계 사항에 대한 사실유무를 직접 또는 윤리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윤리관이 조사를 위하여 제반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각급 당기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협조의무)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기구,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에 대하여 의견진술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기구,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결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포상 또는 징계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 의결로 그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그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 2 절 포 상

제 15 조 (표창구분 등) ①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하여는 대표최고위원의 추천 또는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표창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1등 공로표창

2. 2등 공로표창

3. 3등 공로표창

②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 중앙당 국장급 이상의 사무처 당직자 및 시·도당 사무처장(이하 ‘당직자’라 한다)의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6 조 (표창 사유) ① 1등 공로표창은 당 발전에 영구히 사표가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② 2등 공로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하거나 그 공로가 큰 당원 또는 당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③ 3등 공로표창은 당의 위신을 앙양하고 타의 모범이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 17 조 (표창권자) 표창은 대표최고위원이 행한다. 다만 2등 공로표창은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에게, 3등 공로표창은 시·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 (감사장 수여) 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중앙위의장·시·도당위원장은 당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19 조 (표창 등의 수여) 표창과 감사장은 표창권자 또는 감사장 수여권자가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수하게 할 수 있다.

제 3 절 징 계

제 20 조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4.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제 21 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 ③ 탈당의 권유는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한 자가 개선의 정이 있거나 징계당사자의 사회적 명망과 당에 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탈당권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 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6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21 조의 1 (사회봉사) ①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다른 징계와 선택적으로 또는 병과하여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의 기간은 5일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제 22 조 (범위반 행위자 징계 특례) ①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를 행함에 있어 그 구체적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반 행위 및 이에 대응하는 징계의 종류 등 필요한 징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징계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4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3 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최고위원회의의 부의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징계를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징계처분은 대표최고위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

제 24 조 (본인의 소명)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출두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제 25 조 (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그 사실이 징계의결서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3. 위원회의 의결이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권이 정지된 자의 소명에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 ② 제1항의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재심청구의 방법)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심청구서에 그 사유서 및 징계의결서 등본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기각)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제 28 조 (취소)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29 조 (집행의 취소·정지) 대표최고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제 30 조 (구성)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1 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시·도당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여된 포상·징계 또는 감사장 수여 사항
3. 시·도당위원장으로 부터 통보된 포상·징계 또는 감사장 수여 사항
4.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한 포상·징계 또는 감사장 수여 사항

②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징계 의결 후 10일 이내에 그 사유서 및 징계의결서 등본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당원의 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장(중앙윤리위원회)을 준용하되, 당원에 대한 제명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2007. 9. 1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1일 제1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재정위원회규정

【 1997년 12월 29일 제정 】

개정	1998.5.7	1998.11.26
	2002.5.6	2003.6.10
	2004.8.26	2005.12.1
	2007.10.12	2010.2.2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 3 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당비, 기탁금, 기타 수익금 모금 활동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정치발전비를 편성할 때에는 중앙여성위원장과 협의하여 편성한다.

③ 당기구는 위원회에 예산내역을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현안대응 및 선거와 관련된 예산은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당기구가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4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당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의사의 비밀유지) 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 9 조 (협조의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기구와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견진술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기구와 국회의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위임규정) 당헌 제47조(준칙)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7. 10. 12)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규정

【 2003년 6월 19일 제정 】

개정	2003. 8. 14	2005. 8. 4
	2007. 9. 11	2010. 2. 26
	2012. 2. 9	2014. 2. 25
전면개정	2005. 12. 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제10절(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따라, 공직후보자(대통령후보자 제외)의 추천·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상의 독립) 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3 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안건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사 중에 알게 된 일체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구성 및 운영

- 제 4 조 (위원회 구성)**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은 원칙적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구성을 완료한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예외로 한다.
- ④ 제2항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총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없다.

- 제 5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②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 및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권한)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6장(공직후보자의 추천) 및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추천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103조(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선거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공모 및 각

선거별 선거인단대회 등을 포함하는 선출과정 전반의 사무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 관련부서 및 시·도당 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출 과정의 공

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소집 및 의사)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

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

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직후보자 선정은 재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

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8 조 (심사기준) ①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99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제100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제101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제104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

례)에 의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헌 제102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104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의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준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심의 등)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계

자를 출석시켜 개별면접을 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조사, 여론조사, 면접 및 후보자간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

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재영입위원회가 심사하고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과정에 반영하여야한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는 최고위원회의의 의

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 10 조 (재의결) 위원회는 당헌 제48조(구성)제4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당헌 제48조(구성)제5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는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비례대표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①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례대표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위원회 구성) 제1항 및 제2항과 제5조(위원장·부위원장)를 준용한다.

③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권한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7조(소집 및 의사), 제8조(심사기준), 제9조(심의 등) 및 제10조(재의결) 등을 준용한다.

제 3 장 보 칙

제 12 조 (위임규정)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제척) ① 공직후보 공모에 신청한 위원은 당해 지역의 해당 공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②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4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① 대표최고위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실무 부서 또는 관련 부서는 심사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08. 1. 17)

이 규정은 2008년 1월 17일 제20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 2. 9)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 개최되는 제15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인권위원회규정

【 1998년 4월 18일 제정 】

개정	1998. 11. 26	2002. 5. 6
	2003. 6. 10	2004. 9. 2
	2005. 12. 1	2010. 2. 2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산하에 법률지원단과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
2. 인권신장을 위한 당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당 및 당 관련 인사의 법률쟁송사항 등 지원
5.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
6. 의원입법 활동 관련 자문
7. 기타 인권관련 사항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제 4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수와 종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법률지원단

제 7 조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인권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단장, 부단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에 약간인의 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

제 8 조 (기능) 법률지원단은 인권위원회의의 활동 중 각종 쟁송 등 법률적인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제 9 조 (법률지원단장) 법률지원단장은 인권위원장과 협의하여 소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0 조 (소집 및 의사) 법률지원단의 소집 및 의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제 11 조 (구성) ①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권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인권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12 조 (기능) 위원회는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 13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소집 및 의사)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5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16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12. 1)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인재영입위원회규정

【 2005년 12월 8일 제정 】

개정 2008.9.30 2010.2.2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인재영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 업무
2.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유대강화, 협조
3. 재야단체 및 관련 이익집단과의 원활한 교류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4. 영입인사 역할 및 위상에 대한 건의
5. 당외 특정인재·단체에 대한 활동지원 건의
6. 외부인사 이력 및 주요활동자료 관리
7.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 4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헌 제51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위원회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 6 조 (협조의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기구 및 국회의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기구 및 국회의원은 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실무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해당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일체의 관련 업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8. 9. 30)

제 1 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

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규정에 의한 인재영입위원회는 2005년 9월 8일

제75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외부인사영입위원회 구성안에 의

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책자문위원회규정

【 1997년 12월 29일 제정 】

개정	1998.5.7	1998.11.26
	2001.7.4	2002.5.6
	2003.6.19	2005.12.1
	2006.11.17	2008.9.30
	2010.2.26	2014.2.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 전직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전직 준장성급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사 및 사회적 명망도와 전문분야 활동경력 등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국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동포분과위원회는 명망 있는 해외거주 동포 중에서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표최고위원의 당 운영에 대한 자문

2. 당 이념 및 강령의 연구·발전

제 4 조 (위원장) ① 국책자문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대표최고위원의 명을 받아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5 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총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총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7 조 (임원) 당헌 제19조제13호의 국책자문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간사 및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제 8 조 (임기 및 해임)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 불성실하거나, 중대사고로 당의 명예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최고위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 9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

집하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위원장단회의

제 10 조 (구성) 위원장단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총간사로 구성한다.

제 10 조의 2 (특별기구) ① 위원장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단회의 의결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단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장단회의는 월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단회의는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③ 위원장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분과위원회

제 12 조 (종류 및 기능)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정세분석분과위원회
2. 행정·안전분과위원회
3. 외교·통상·통일분과위원회
4. 국방분과위원회
5. 재정·경제분과위원회
6. 농림·수산·식품분과위원회
7. 국토·해양·환경분과위원회
8. 교육·과학·기술분과위원회
9. 사회·문화·노동분과위원회
10. 해외동포분과위원회
11. 여성분과위원회
12. 이북도민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관련 소관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가 명확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그 소관 분과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위원) 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각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소관 분과위원회를 결정한다.

- ② 위원은 1개의 분과위원회에만 속할 수 있다. 다만, 정세분석분과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어느 분과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다.

제 14 조 (임원) ①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둔다.

-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장의 추천과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15 조 (임원의 기능) ①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단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분과위원장을 보좌한다.

제 16 조 (소집 및 의사) ① 분과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7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8 조 (실무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버세대위원회규정

【 2010년 2월 26일 제정 】

개정 2014.2.2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실버세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실버세대 관련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협조
2. 실버세대의 당 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3. 실버세대의 고용.건강.복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관련 정책 활동 지원

제 4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 및 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사무총장은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7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여성위원회규정

【 1998년 4월 18일 제정 】

개정	1998.5.7	1998.11.26
	1999.5.11	2001.5.2
	2002.3.8	2002.5.6
	2002.7.31	2003.6.19
	2004.7.2	2004.8.19
	2006.11.17	2008.9.30
	2010.2.26	2012.2.9
	2014.2.25	
전면개정	2005.11.24	2007.2.1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중앙당에 중앙여성위원회, 시·도당에 시·도여성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온오프라인 상의 여성유권자 대상 당 지지세 확산활동
2. 각종 여성단체·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
3.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및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4. 여성정치인 및 각 분야 여성지도자의 발굴·양성
5. 각종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 확대 및 지원 활동
6. 여성정치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7. 당헌 제19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여성대회 주관
8. 결혼이주여성, 미혼모 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

제 2 장 여성위원회

제1절 중앙여성위원회

제 4 조 (중앙여성위원회) ① 중앙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수인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의 30%이상은 만 45세 미만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중앙여성위원장’이라 한다.)은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여성대회에서 대의원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 한 자로 정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되, 부위원장 중 1명을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중앙여성위원회에 여성정치참여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인사로서 고문단을 둘 수 있다. 고문단 회장은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고문은 고문

단 회장의 추천과 중앙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중앙여성위원회에 자문위원회 및 필요한 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각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 위원을 두되, 자문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각 위원회의 간사 1인과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중앙여성위원회 산하에 각계각층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직할조직을 둘 수 있다.

제 5 조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중앙여성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중앙여성위원장, 상임전국위원, 당소속 여성국회의원,

여성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중앙여

성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 시·도여성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실무지원부서의 장을 당

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임명직을 포함하여 총 100

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명직의 30%이상을 만45

세미만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여성위원장으로 한다.

제 6 조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① 차세대 여성정치인 및 여성사회지도

자를 발굴·양성하고, 차세대 여성유권자에 대한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해 중앙여성위원회 산하에 만 45세 미만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중앙

차세대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수인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

위원이 임명한다.

제 7 조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① 공직선거에 출마할 여성정치인

을 발굴·육성하고 각계각층의 여성인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를 둔다.

②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에서 심의한다.

③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의 수료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가산

점과 전략공천시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2절 시·도 여성위원회

제 8 조 (시·도여성위원회) ① 시·도여성위원회는 위원장, 수인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의 30% 이상은 만45세 미만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여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여성위원장’ 이라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

원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여성위원회에 여성정치참여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인사로서

시·도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고문 또

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시·도여성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시·도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시·도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시·도여성위원장,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당소속 여성광역의원, 당소속 여성기초의원, 시·도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시·도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 시·도당 사무처 여성담당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시·도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을 포함하여 총 8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임명직의 30%이상을 만45세미만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 ⑥ 시·도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여성위원장으로 한다.
- ⑦ 시·도여성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시·도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 ⑧ 시·도여성위원회 산하에 만 45세 미만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시·도차세대여성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시·도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차세대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여성위원장이 임명한다.
- ⑨ 시·도여성위원회 산하에 여성지도자의 발굴·양성과 여성정치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구로 새누리여성정치아카데미를 두며, 학사관리 등 제반 운영사항에 대한 심의는 시·도 여성위원회에서 한다.
- ⑩ 시·도여성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또는 자치구·시·군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⑪ 시·도여성위원회 산하에 각계각층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직할조직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전국여성대회

제 1 절 목적 등

제 9 조 (목적) 중앙여성위원회는 당헌 제18조제1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등을 위한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제 10 조 (기능) 전국여성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헌 제55조제4항이 정한 중앙여성위원장 및 제2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상임전국위원의 선출
2. 당헌 제19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3. 당 주요여성정책 및 주요 여성관련 당무에 관한 의견채택

제 11 조 (소집) ① 정기전국여성대회는 1년마다 중앙여성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 여성위원장에게 사퇴 또는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전국여성대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정기전국여성대회는 전임 여성전국위원의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임시전국여성대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여성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여성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전국여성대회 소집은 중앙여성위원장이 전국여성대회 개최일전 5

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⑤ 여성상임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여성대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2 조 (의결정족수) 이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

제 13 조 (대의원의 구성) ①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중앙여성위원장
2. 여성 상임전국위원
3. 당소속 여성 국회의원
4. 당소속 여성 시·도지사
5. 여성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6. 여성 전국위원
7.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8. 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
9. 중앙여성위원회 고문단 회장

10. 중앙여성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장
 11. 당소속 여성 자치구 시·군 자치단체장
 12. 당소속 여성 시·도의회 의원
 13. 당소속 여성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4. 시·도 여성위원장
 15. 중앙당 및 시·도당 여성 사무처당직자
 16. 중앙여성위원회가 선임하는 책임당원 300인 이내
 17. 각 시·도여성위원회가 선임하는 책임당원 30인 이내
 18. 당원협의회별 선임 여성당원 각 5인
- ② 제1항제16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은 각각 30%이상을 만 45세 미만(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③ 제1항제16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여성대회 대의원 명부확정시까지로 한다.

제 14 조 (대의원 당비납부 의무)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전국여성대회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5 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 상임전국위원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결기구로써,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

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 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된다.

제 16 조 (선거관리위원회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공고
3. 후보자 등록 관련 사무
4.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시정조치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9. 기타 선출관련 제업무

제 17 조 (위임규정)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18 조 (피선거권)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

청일 현재 여성 책임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 19 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당소정양식)
2. 이력서 (당소정양식)
3. 서약서 (당소정양식)
4. 범죄 경력 조회서 (벌금형 이상)
5. 주민등록등·초본
6. 당비 납부확인서
7. 기탁금 납부확인서
8. 증명사진 3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선거일) 선거일은 전국여성대회기간 종료일 2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2 조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제 23 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대표최고위원및최고

위원선출규정을 준용한다.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 선거운

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향응·교통편의제

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선거인에게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 위하여 당원에 한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출

규정 제35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 행위

5.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당원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7.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8.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

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9.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

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10.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중 선거관리위원회

가 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37조(합동연설회) 규정에 의

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회 개최 행위

제 24 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대의원이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인

터넷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투표하되, 그 구체적인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투표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당선인 결정) ① 중앙여성위원장은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최다득표자로 하고, 여성상임전국위원은 득표순위에 따라 5위까지로 하되, 후보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잔여인원은 중앙여성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

여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중앙여성위원장 당선인
으로 한다.

- ② 최다득표자 또는 동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26 조 (당선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당선은 선거관리위
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 경고 조치한 경
우

제 3 절 여성전국위원 선출

제 27 조 (선출방법) ①당헌 제19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중
상임전국위원을 제외한 17인(이하 ‘여성전국위원’ 이라 한다.)은
17개 시.도여성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시.도별 정수는 각 1인으로
한다.

- ② 여성전국위원은 시.도여성전국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된 대의원의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로 선출방식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여성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여성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8 조 (여성전국위원 선출 대의원) 여성전국위원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은 당해 전국여성대회 대의원 중에서 각 시·도당에 소속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9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여성전국위원 선출을 위해 각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0 조 (위임규정) 여성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 31 조 (준용규정) 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출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 (사퇴시한규정) 현직 중앙여성위원장이 재출마할 경우, 선거

일 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전국여성대회 및 운영위원회 소집 등 중앙여성위원장의 권한은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제 33 조 (예외규정) 이 규정 확정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국여성대회의 대의원 자격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34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사무처의 특정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35 조 (위임규정) 중앙여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여성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 2. 9)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 개최되는 제15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청년위원회규정

【 1998년 11월 26일 제정 】

개정	1999.3.5	2002.5.6
	2003.6.19	2003.10.28
	2007.4.3	2008.9.30
	2010.2.26	2014.2.25
전면개정	2004.7.2	2004.8.19

2005.11.24

2007.2.1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중앙당에 중앙청년위원회, 시·도당에 시·도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청년위원회, 시·도청년위원회는 만 45세 이하의 남·녀 당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청년지지세 확산 및 각종 청년단체와의 유대 강화

2. 21세기 일류국가로의 발전 및 통일을 선도할 각 분야의 청년지도자 발굴. 양성
3. 청년층의 여론 수렴 및 반영
4. 각종 선거시 득표 전위조직으로 당 후보자 지지 분위기를 고양하고 타당의 청년조직 활동에 대응
5. 청년층의 지지 확대를 위하여, 학업.취업.출산.육아 등 2040 생애 주기에 맞는 소통 프로그램의 마련
6. 청년인재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청년인재육성본부 운영

제 2 장 청년위원회

제1절 중앙청년위원회

- 제 4 조 (중앙청년위원회)** ① 중앙청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중앙청년위원장’ 이라 한다) 1인과 3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 ②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되 부위원장 중에서 1인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청년위원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로서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④ 중앙청년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활동 청년층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직할조직을 둘 수 있다. 직할조직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은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5 조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청년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중앙청년위원장과 청년전국위원,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시·도청년위원장, 미래세대위원장, 대학생위원장 및 중앙당 실무지원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회의의 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수인의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청년위원장으로 한다.

제 6 조 (미래세대위원회) ①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의 청년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중앙청년위원회 산하에 만19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구성되는 미래세대위원회를 둔다.

② 미래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 20인 이내의 부위원장,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미래세대위원장은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미래세대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청년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대학생위원회) ① 대학생의 정치 참여와 청년 정책 수립 및 반영을 위해 중앙청년위원회 산하에 대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생위

원회를 둔다.

- ② 대학생위원회는 위원장 1인, 20인 이내의 부위원장,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학생위원장은 미래세대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청년위원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학생위원장의 추천으로 미래세대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절 시·도청년위원회

- 제 8 조 (시·도청년위원회)** ① 시·도청년위원회는 위원장, 20인 이내의 부위원장,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청년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청년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시·도청년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시·도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시·도청년위원장, 부위원장, 미래세대위원장, 대학생위원장, 국회의원 선거구 청년지회장, 청년담당 시·도당사무처당직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시·도청년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수인의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시·도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청년위원장으로 한다.
- ③ 시·도청년위원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로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청년위원회 자문위원회규정을 준용

한다.

- ④ 시.도청년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회를 두며, 시.도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청년 지회장 1인, 수인의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⑤ 시.도청년위원회 산하에 각계 청년층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직할조직을 둘 수 있다. 직할조직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은 시.도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 ⑥ 시.도청년위원회 산하에 시.도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미래세대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청년위원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미래세대위원회를 둔다.
- ⑦ 시.도대학생위원회는 시.도미래세대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청년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시.도대학생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미래세대위원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장 전국청년대회

제 1 절 목적 등

제 9 조 (목적) ① 청년위원회는 당헌 제19조제11호 및18호에 해당하

는 전국위원 선출 등을 위한 전국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제 10 조 (기능) 전국청년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헌 제56조제4항이 정한 중앙청년위원장 및 제2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상임전국위원의 선출
2. 당헌 제19조제18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3. 당 주요청년정책 및 주요청년관련당무에 관한 의견채택

제 11 조 (소집) ① 전국청년대회는 1년마다 중앙청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청년위원장에게 사퇴 또는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전국청년대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정기전국청년대회는 전임 청년전국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임시전국청년대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청년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청년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전국청년대회 소집은 중앙청년위원장이 전국청년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⑤ 청년 상임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청년대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2 조 (의결정족수) 이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

제 13 조 (대의원의 구성) ①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만 45세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

1. 중앙청년위원장
2. 청년 상임전국위원
3. 청년 전국위원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6. 당 소속 시·도지사
7.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8. 시·도청년위원장
9. 미래세대위원장
10. 시·도청년위원회 부위원장
11. 미래세대위원회 부위원장
12. 대학생위원장
13. 당 소속 청년 자치구·시·군의 장

14. 당 소속 청년 시.도의회 의원
15. 당 소속 청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6. 중앙당 및 시.도당 청년 사무처당직자
17. 국회의원 선거구별 청년 지회장
18.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19. 당원협의회별 선임 청년당원 각 5인
20. 중앙 및 시.도 청년위원회 운영위원
21. 중앙 및 시.도 청년위원
22. 미래세대위원
23. 대학생위원

② 전국청년대회의 의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다.

제 14 조 (대의원 당비납부 의무)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전국청년대회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 15 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 상임전국위원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결기구로써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

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된다.

제 16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공고
3. 후보자 등록 관련 사무
4.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시정조치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선거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9. 기타 선출관련 제업무

제 17 조 (위임규정)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18 조 (피선거권) 전국청년대회 종료일을 기준으로 만 45세 미만인 자로서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 19 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당소정양식)
2. 이력서(당소정양식)
3. 서약서(당소정양식)
4. 범죄 경력 조회서 (벌금형 이상)
5. 주민등록등.초본
6. 당비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
7. 기탁금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
8. 증명사진 5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선거일) 선거일은 후보등록개시일전 3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2 조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 23 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대표최고위원및최고
위원 선출규정을 준용한다.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 선거운
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향응.교통편의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선거인에게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 위하여 당원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
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행위
5.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당원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7.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8.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9.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10.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중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정하지 아니한 행위

1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회 개최 행위

제 24 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대의원이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투표하되, 그 구체적인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투표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당선인결정) ① 중앙청년위원장은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최다득표자로 하고, 청년상임전국위원은 득표순위에 따라 3위까지로 하되, 후보자가 3인 미만인 경우 잔여인원은 중앙청년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중앙청년위원장 당선인으로 한다.

- ② 최다득표자 또는 동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26 조 (당선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당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의 경고 조치한

경우

제 3 절 청년전국위원 선출

제 27 조 (선출방법) ① 당헌 제19조제18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중 상임전국위원을 제외한 19인(이하 ‘청년전국위원’이라 한다.)은 17개 시·도청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시·도별 정수는 서울·경기 각 2인, 기타 시·도 각 1인으로 한다.

② 청년전국위원은 시·도청년전국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된 대의원의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식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청년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청년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8 조 (청년 전국위원 선출 대의원) 청년전국위원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은 당해 전국청년대회 대의원 중에서 각 시·도당에 소속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9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청년전국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각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해당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0 조 (위임규정) 청년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 31 조(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32 조 (위임규정) 청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청년위원장이 정한다.

제 33 조 (사퇴시한규정) 현직 중앙청년위원장이 재출마할 경우, 선거일 공고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전국청년대회 및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중앙청년위원장의 권한은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디지털정당위원회규정

【2004년 7월 2일 제정】

개정	2005. 11. 24	2006. 9. 26
	2007. 2. 13	2007. 10. 12
	2008. 9. 30	2010. 2. 26
	2014. 2. 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정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디지털정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디지털정당 구축과 인터넷정치활동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

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도당에 시·도 디지털정당위원회를 두고, 당원협의회 디

지털정당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산하에 대학생디지털정당위원회와 국민소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① 디지털정당 구축을 위한 지원 및 자문

② 당 인터넷 지지세 확산을 위한 인터넷활동 관련 지원 및 자문

③ 당 인터넷활동, 인터넷정치 등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토의

④ 네티즌 여론을 수렴하여 당에 전달

제 2 장 디지털정당위원회

제 1 절 중앙디지털정당위원회

제 4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3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시.도 디지털정당위원회

제 6 조 (시.도디지털정당위원회) ① 시.도 디지털정당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디지털정당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시.도 디지털정당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시.도 디지털정당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시.도 디지털정당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시.도 디지털정당위원회 운영위원은 시.도 디지털정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도 디지털정당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 디지털정당위원장으로 한다.

④ 시.도 디지털정당위원회 산하에 당원협의회별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 디지털정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디지털지회장 1인, 수인의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디지털정당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보 칙

제 7 조 (업무의 지원) 위원회의 업무는 홍보기획본부장과 협의하여 중앙당 뉴미디어국이 지원 할 수 있다.

제 8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정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디지털정당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장애인위원회규정

【 2005년 11월 24일 제정 】

전면개정	2007.2.13	
개정	2008.9.30	2010.2.26
	2014.2.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중앙당에 중앙장애인위원회, 시·도당에 시·도장애인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 추진
2.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3. 각종 장애인단체와의 유대 강화
4. 장애인 대책 관련 당 운영방향 건의
5.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 2 장 장애인위원회

제 1 절 중앙장애인위원회

제 4 조 (중앙장애인위원회) ① 중앙장애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중앙장애인위원장’ 이라 한다.) 1인 및 수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중앙장애인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②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중앙장애인위원장을 보좌한다. 단,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자문기구로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중앙장애인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5 조 (중앙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중앙장애인위원장
2. 상임전국위원
3. 시·도장애인위원회 위원장
4. 중앙당 실무지원부서의 장

③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위원회 및 시·도장애인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2. 기타 위원회 주요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긴급현안이 발생하여 중앙장애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시·도장애인위원회

제 6 조 (구성) ① 시·도장애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시·도장애인위

원장’ 이라 한다.), 수인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장애인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장애인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장애

인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시·도장애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시·도장애인위원장은 시

.도장애인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도장애인위원회 운영을 총괄한

다.

② 시.도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도장애인위원장을 보좌하고, 시.

도장애인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

.도장애인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시.도

장애인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소집 및 의사) ① 시.도장애인위원회는 시.도장애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장애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도장애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시·도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시·도장애인위원회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시·도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

며, 운영위원회는 시·도장애인위원장, 부위원장, 시·도당 장애인 담

당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시·도장애인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수인의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장애인위원장은 시·도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0 조 (지회) ① 각 시·도장애인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회는 시·도장애인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

원장이 임명하는 지회장 1인, 수인의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

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전국장애인대회

제 1 절 목적 등

제 11 조 (목적) ① 장애인위원회는 당헌 제19조제11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등을 위한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한다.

제 12 조 (기능) 전국장애인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헌 제58조제4항이 정한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제23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상임전국위원의 선출
2. 당헌 제19조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의 선출
3. 당 주요 장애인정책 및 주요 장애인 관련 당무에 관한 의견 채택

제 13 조 (소집) ① 전국장애인대회는 1년마다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장애인위원장에게 사퇴 또는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전국장애인대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기전국장애인대회는 전임 장애인전국위원의 임기 만료일 전까지

개최하여야한다.

- ③ 임시전국장애인대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장애인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전국장애인대회 소집은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전국장애인대회 개최 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⑤ 장애인상임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 조 (의결정족수) 이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

제 15 조 (대의원의 구성) ①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2. 시·도장애인위원회 위원 중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는 20인
3. 지회 장애인 당원 중 당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각 4인

4. 지회 장애인 당원 중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4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 자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제 16 조 (대의원의 당비납부 의무)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전국장애인대회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 17 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결기구로써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된다.

제 18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전국장애인대회와 후보자 등록 공고

3. 후보자 등록 관련 사무
4.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시정조치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9. 기타 선출관련 제업무

제 19 조 (위임규정)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20 조 (피선거권)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 21 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당 소정 양식)
2. 이력서(당 소정 양식)
3. 서약서(당 소정 양식)
4. 범죄 경력 조회서 (벌금형 이상)
5. 주민등록등·초본
6.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7. 기탁금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8. 증명사진 10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22 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선거일) 선거일은 전국장애인대회 기간 종료일 2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4 조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 25 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선출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원 5인만이 할 수 있다.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중앙위원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후보자의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 행위
4. 개별적 모임 개최 행위

제 26 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대의원이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투표 등을 이용하여 투표하되, 그 구체적인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투표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7 조 (당선인 결정) ①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중앙장애인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최다득표자로 하며, 상임전국위원은 득표순위에 따라 3위까지로 하되, 후보자가 3인 미만인 경우 잔여인원은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중앙장애인위원장 당선인으로 한다.

② 최다득표자 또는 동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28 조 (당선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당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로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의 경고 조치한 경우

제 3 절 장애인전국위원 선출

제 29 조 (선출방법) ① 당헌 제19조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중 상임전국위원을 제외한 19인(이하 ‘장애인전국위원’이라 한다.)은 17개 시·도장애인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시·도별 정수는 서울·경기 각 2인, 기타 시·도 각 1인으로 한다.

② 장애인전국위원은 시·도장애인전국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된 대의원의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식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장애인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장애인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0 조 (장애인전국위원 선출 대의원) 장애인전국위원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은 당해 전국장애인대회 대의원 중에서 각 시·도당에 소속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31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장애인전국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각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2 조 (위임규정) 장애인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 33 조 (사퇴시한규정) 현직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재출마할 경우, 선거일 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전국장애인대회 및 중앙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중앙장애인위원장의 권한은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부 칙 (2007. 2. 13)

이 규정은 2007년 2월 13일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홍보위원회규정

【 1998년 11월 26일 제정 】

개정	1999.3.5	2000.7.12
	2001.10.10	2002.5.6
	2003.6.10	2004.9.2
	2005.12.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위원회는 중앙당에 중앙홍보위원회, 시·도당에 시·도당 홍보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지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기본방향 수립
2. 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3. 각종 간행물 제작방향 수립
4. 방송토론 및 연설 지도·조정
5. 기타 당 홍보활동 관련사항

제 4 조 (중앙홍보위원회) ① 중앙홍보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중앙홍보위원회 위원장은 홍보기획본부장으로 하고, 디지털정당위

원장, 홍보기획부분부장 및 대변인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며, 시.도당 홍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홍보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앙홍보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시.도당 홍보위원회) ① 시.도당 홍보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 및 사무총장과 홍보기획본부장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2030 홍보단) 중앙 및 시.도당 홍보위원회 산하에 젊은 유권자층의 지지도 제고를 위해 2030 홍보단을 두며, 중앙 2030 홍보단의 임명은 중앙홍보위원장이, 시.도당 2030 홍보단의 임명은 시.도당위원장이 한다.

제 7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사무총장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8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12. 1)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자치안전위원회규정

【 1998년 11월 26일 제정 】

개정	2002.5.6	2003.6.19
	2004.9.2	2005.11.28
	2008.9.30	2010.2.26
	2010.9.30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지방자치관련 당 활동 기본방향 수립
2.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각급 지방선거 대책수립
3.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활동 관련사항
4. 지방자치단체 여론수렴 및 관련 정책개발

제 4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사무총장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외협력위원회규정

【 2005년 11월 28일 제정 】

개정 2008.9.30 2010.9.30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외협력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유대강화, 대책수립 및 협조
2. 재야단체 및 관련 이익집단과의 원활한 교류 및 상호협력체제 구축
3. 국민의 당 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제 4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

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시.도당 대외협력위원회) ① 시.도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 수석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인, 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③ 시.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중앙당 대외협력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사무총장은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7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
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
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재외국민위원회규정

【 2010년 2월 26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국민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해외교민단체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 및 교류활동
2. 재외국민의 교육·고용 등에 관한 정책 개발
3. 재외국민의 권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청원·입법 지원 활동
4.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활동

제 4 조 (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 및 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사무총장은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8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위원회규정

【 2001년 4월 20일 제정 】

개정	2002.5.6	2003.6.19
	2004.9.2	2005.12.8
	2010.2.2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

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국 정당, 사회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활동
2. 당 국제관련활동의 자문

제 4 조 (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12. 8)

이 규정은 2005년 12월 8일 제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노동위원회규정

【 2006년 9월 26일 제정 】

개정 2008. 9. 30 2014. 2. 2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중앙당에 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산하에 시·도당 노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검토
2.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

3. 각종 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4. 노동정책 관련 당 운영방향 건의
5.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 5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수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사무총장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앙사무처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7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시·도당 노동위원회) ① 시·도당 노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수인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30인 이내로 한다.

② 시·도당 노동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중앙당 노동위

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 노동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준용규정) 시·도당 위원회의 기능과 소집 및 의사는 제4조(기능) 및 제7조(소집 및 의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통일위원회규정

【 2010년 2월 26일 제정 】

개정 2010.9.30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통일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통일 관련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협조
2. 통일 관련 정책 활동 지원
3. 남북경제협력 지원과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남북문화교류 활동 지원

제 4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실무지원부서) 정책위원회 의장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 산하 지원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재능나눔위원회규정

【 2014년 2월 25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능나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재능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2. 당원 봉사활동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3. 시민 봉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제 4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사무총장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재해대책위원회규정

【 2010년 9월 30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해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중앙당에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산하에 시·도당 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구성)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천재지변과 기타 재해의 예방, 구호 및 복구 지원
2. 재해대책활동에 사용될 구호금품의 모집
3. 시·도당 재해대책위원회에 대한 지휘·감독

제 5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당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제 7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시·도당 재해대책위원회) ① 시·도당 재해대책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시·도당 부위원장
3.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4. 시·도당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인

- ② 시·도당 재해대책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된다.
- ③ 시·도당 재해대책위원회 간사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된다.

제 9 조 (준용규정) 시·도당 재해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소집 및 의사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앙연수원규정

개정 2010.9.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연수원(이하 연수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중앙연수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② 교육원의 원장은 당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 (교수) ① 연수원에 강의 및 교재연구를 위하여 약간인의 교수를 둔다.

② 교수는 중앙연수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연수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강좌의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 (실무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연수원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해당부서의 장은 연수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제 2 장 중앙연수위원회

제 5 조 (구성) ① 중앙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앙연수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원장 및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중앙연수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교육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2. 중장기적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 7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책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

【 2005년 6월 30일 제정 】

개정	2005.7.7	2005.11.28
	2007.9.11	2007.10.12
	2010.2.26	2010.9.30
	2013.10.2	

제 1 조 (목적) ① 이 규정은 당헌 제6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책연구소는 국가와 당의 중장기 비전·전략을 연구하고, 당의 정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소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존중하여 정책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① 이 규정이 규율하는 정책연구소의 명칭은 여의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수도에 두며,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분원

을 둘 수 있다.

제 3 조 (연구소의 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장기 국가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 당의 이념과 가치 정립
3. 국가적 이슈 또는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
4.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5. 청년 정치 지도자 양성
6. 국내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정책·지식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 활동
8. 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및 국회 각 위원회의 활동 지원
9.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활동
10.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 4 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이사
2. 감사 2인

제 5 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의 이사로 구성된다.

1. 이사장
2. 원내대표
3.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정책위의장’ 이라 한다)
4. 사무총장
5.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

6.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하는 3인 이내
7. 외부인사 중 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
- ② 이사장은 대표최고위원이 겸임한다.
- ③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현직 국회의원은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원장 등) ① 연구원에는 1인의 원장을 두고, 수인의 부원장을 둔다.

- ②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 중에서 연구원의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사로 선임하며, 임기를 보장한다.
-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⑥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감사) ①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최고위원회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당과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 9 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6.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0 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1.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 의결이 있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3. 원장이 의안심의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4. 감사가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1 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연구원에 외부인사와 당내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원 직원 임면, 평가 등을 담당하게 한다.

②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 소속 사무처당직자와 연구원 직원간에는 중앙당 사무

처당직자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인적교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적교류를 위해 파견된 사무처당직자의 임면은 별도의 당규인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④ 연구원의 직원이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12 조 (보고 및 승인) ①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연차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감사결과, 기타 당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공개 의무)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의 정책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비밀엄수의무) 연구원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여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 ① 연구원에 여론조사실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현안 및 정책개발 조사
2.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3. 주요 당무관련 여론조사

4. 여론동향 분석 보고

5.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

② 대표최고위원은 연구원에 각종 선거 등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5호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 제3호의 여론조사 결과는 실무책임자가 당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무총장은 결과보고를 받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정관을 따른다.

부 칙 (2007. 10. 12)

제 1 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 개최되는 제19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정관 등 개정의무) 이사회는 이 규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에 맞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개정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3. 10. 2)

제 1 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일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여의도연구원장의 자격과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성정치발전기금규정

【 2003년 6월 19일 제정 】

개정 2004.11.18 2010.2.2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여성정치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정당지원 국고보조금의 10%와 중앙당 당비의 일정비율
2. 여성위원회 기금 및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 3 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치인 발굴 및 양성
2.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 지원
3. 여성정치지도자 및 예비여성정치인의 여성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4.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홍보
5. 시·도당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활동 지원
6. 국내외 여성단체, 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여론수렴 활동

제 4 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여성위원회에 일임한다.

제 5 조 (회계) 기금의 회계처리는 당헌 제9절(재정위원회)제46조(기능)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다.

부 칙 (2004. 11. 18)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8일 개최되는 제49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새누리정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대학원장이 정한다.

제 5 조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정치대학원 수료자는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회원이 되며 총동문회 구성 및 운영방법은 총동문회 회칙에 따른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 2. 9)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 개최되는 제15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조직운영규정

【 1997년 12월 29일 제정 】

개정	1998.2.11	1998.3.2
	1998.5.7	1998.11.26

	2002. 1. 21	2002. 2. 27
	2002. 5. 6	2003. 6. 10
	2003. 8. 14	2004. 6. 10
	2014. 2. 25	
전면개정	2005. 12. 1	2006. 9. 26
	2008. 9. 30	2010. 2. 26
	2010. 9. 30	2012. 2. 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지방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각급 공직선거의 당해 선거구 선거조직을 말한다.

제 3 조 (지방조직의 구성) 시·도당은 시·도당대회·운영위원회, 당원협의회, 사무처 및 각종 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시·도당

제 4 조 (시·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시·도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운영위원
3. 관할 당소속 국회의원
4. 당소속 시·도지사
5.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6.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중앙위원회 시·도당 연합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9. 당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0.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1. 직역별로 선임된 직능대표
12.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정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5% 이내에서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정하되, 여성 50% 이상 만45세 미만 20%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 수의 5% 이내에서 직능대표성을 가진 당원으로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정수와 당원협의회별로 선임하는 당원의 수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대의원의 정수는 전체대의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여성 50% 이상, 만45세

미만 30%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⑤ 위 제4항과 같이 대의원을 선임하는 경우 복수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당원협의회는 자치구·시·군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 조의 2 (대의원 등 자격요건) ①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시·도당대회 대의원, 시·도당 운영위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의 당직을 맡을 수 없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당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시·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2. 당헌 제19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의 선출
3.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4. 공직후보자(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5.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당대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 6 조 (시·도당대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시·도당대회는 매년 최

고위원회의 에서 결정한 기간 내에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기 시.도당대회의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임시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시.도당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시.도당대회 대의원 명부는 대회공고일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도당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 2. 당소속 국회의원
- 3. 당소속 시.도지사
-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5. 지역대표 전국위원
- 6.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 7.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 8.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
- 9. 시.도의회 대표의원

10.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겸한다.

④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대회 위임사항의 처리
2.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3. 시.도당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추천 동의
4.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
7. 각급 선거인단의 구성
8. 당원협의회 읍.면.동 운영위원의 추인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시.도당대회 대의원을 선임하는 경우 및 각급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다.

⑥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⑦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운영위원이 의결내용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⑧ 제2항 제1호의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해당 시·도 관할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넘지 않는 인원을 선임하되, 1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위원장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 ⑨ 시·도당 운영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에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제 8 조 (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수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며 시·도당의 당무를 총괄한다.
- ④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 9 조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등록후보가 1인이거나 투표일 전일까지 타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으로 후보자가 1인만 남은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②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중 연장자가 시·도당위원장이 된다.
- ④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40일 이내에, 사고 시·도당위원장이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0 조 (시.도당대회 대의원 등의 임기) ①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시.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 전까지로 한다.

② 시.도당 부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의 임기는 시.도당위원장으로 부터 임명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되,

다음 시.도당위원장 선출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 (시.도당대회 분과위원회)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2 조 (시.도당대회 등의 소집공고)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전 3일까지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공고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시.도당대회의 승인 및 이의신청)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도당대회 대의원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은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회의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의 접수여부는 사무총장이 결정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 ④ 제1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선출, 각종 대의원 선임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 14 조 (시.도당대회 선출 전당대회 대의원)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전당대회 대의원의 정수는 전당대회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시.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시.도당 정책개발위원회) ① 시.도당에 정책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당 정책개발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소속 국회의원, 당소속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시·도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회의장 및 부의장으로 구성한다.
- ③ 정책개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겸하고,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인으로 하며 간사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된다.
- ④ 정책개발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당정책의 연구·개발, 입안 및 심의
 - 2. 시·도단위 지역개발정책의 심의
- ⑤ 정책개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⑥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과 당소속 시·도지사, 당원협의회와 당소속 자치구·시·군의장간에 정기적으로 당정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7 조 (시·도당 자치단체장협의회) ① 시·도당에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단체장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단체장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을 두되, 단체장협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된다.
- ③ 단체장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

회 의결로 정한다.

제 18 조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 ① 시.도당에 당 소속 시.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광역의원총회와 자치구.시.군의 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기초의원협의회를 두고 그 명칭은 {새누리당 ○○시.도의회의원총회} 및 {새누리당 ○○시.도기초의원협의회}로 한다.

②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1인, 원내부대표(이하 ‘부대표’라 한다) 수인을 두고, 기초의원협의회에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을 두되, 대표 및 회장은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선출하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③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 기능.운영.소집 및 의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④ 당 광역의회의장.부의장, 기초의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선거는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실시한다.

제 19 조 (시.도당 대변인 등) ① 시.도당에 시.도당대회,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 홍보, 기타 시.도당 의사의 공식발표기관으로 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0 조 (시.도당 고문.자문위원) 시.도당에 시.도당위원장이 위촉하

는 고문 및 자문위원 수인을 둘 수 있다.

제 21 조 (시·도당 상설위원회 등) ① 시·도당에 상설위원회, 임시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는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디지털정당위원회, 장애인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이 있다.

③ 제1항의 특별기구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헌·당규에 의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2 조 (사고 시·도당) ① 관내 국회의원선거구 중 3분의 2이상의 지역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거나, 조직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당무수행이 어려운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사고 시·도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고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은 사퇴한 것으로 보고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고 시·도당의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날로부터 해산된 것으로 보고, 사고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당원협의회

제 23 조 (당원협의회외의 구성 및 취소) ① 당원협의회는 지역 유권자수

의 0.5%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두되,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둔 책임당원의 수가 해당지역 유권자수의 0.5% 미만인 경우
2. 당원협의회가 당헌·당규에 심히 위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기타 당원협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된 당원협의회는 취소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당원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당원협의회의 활동) ① 당원협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 지원
2. 시·도당 주관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지원
3.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4. 당세 확장 활동
5. 기타 시·도당 요청사항 지원

② 시·도당은 당원협의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 25 조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회) ① 당원협의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1.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 당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3.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4.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5.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6. 직전 국회의원선거에 당 공천으로 출마한 당해 지역구 후보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 읍.면.동 운영위원
 8.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원협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7인 이내의 추천 운영위원
- ② 제1항 제7호의 읍.면.동 운영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명을 선임하되, 읍.면.동별 유권자 수가 당해 당원협의회 읍.면.동별 평균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수 이내에서 3인까지 선임할 수 있으며, 제7호 및 제8호의 운영위원의 임기는 추천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한다.
-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 대의원의 추천
 2.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
 3. 시.도당 위임.요청사항의 처리
 4. 당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6 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매년

선출하되, 선출시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

②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

으로 선출한다.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원협의회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원

협의회가 다시 구성된 후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

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승인) ① 당원협의회 운

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당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출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당원협의회에서 경선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에서 선임한다.

③ 선출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대회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당에 선출대회결과 승인신청서와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여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접수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 28 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사퇴 등) ① 당원협의

회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퇴한다.

1.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

2.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② 운영위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사퇴하여야 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은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시기는 후

보자공모 신청 시로 한다.

제 29 조 (당원협의회 기구) ① 당원협의회에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둔다.

② 당원협의회에 각종 위원회 및 기타 기구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장 및 위원 등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0 조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회의원선거구에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2. 당원협의회가 취소되는 경우
3.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② 조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조직위원장의 추천과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 의결로 읍·면·동 운영위원 및 추천 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위원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선거

구는 관할 시·도당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고, 복수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의 경우 시·도당 위

원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구·시·군별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때 임명절차는 조직위원장의 경우에 준한다.

제 4 장 보 칩

제 31 조 (위임규정) 지방조직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지방조직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칩 (2008. 9. 3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당원협의회 구성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정 시행 전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당원협의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해 구성된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

는 이 규정에 의해 최초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지로 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당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책임당원은 2006년

3월 31일까지는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당원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 2. 9)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 개최되는 제15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후보자선출규정

【 2005년 12월 5일 제정 】

개정 2014.2.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

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당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국회교섭단

체에 등재된 당 소속의원은 선거권이 있다.

② 당원으로서 후보자 등록일까지 국회교섭단체에 등재된 당 소속의

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당해 국

회의원 임기개시 전까지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에는 당소속 국회의

원 당선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조 (선거일) ① 당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선거는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일까지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대표최고

위원이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②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일까지 당 국회의

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당 국회상임위원장후보자의 선거는 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원회 배정이 완료된 후 국회상임위원장 선거일까지 실시하며, 선거

일은 대표최고위원이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④ 국회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일까지 당 국회상임
위원장후보자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각각 그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4 조 (의원총회)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대표최고위원이 공고한 선거일에 원내대표가 소집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원내대표의 사퇴 또는 궐위로 인한 경우에는 대표최고위원이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제 5 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설치 및 구성) ①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7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3. 후보자 등록공고 기타 등록관련 사무

4. 후보자 및 소속의원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합동토론회 및 정견발표 등 선거운동 관리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단속 및 시정조치 등
9.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0.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당 국회의장.부위원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제업무

제 8 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 국회의장.부위원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제 9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후보자

제 10 조 (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 전 2일에 한

다.

-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일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당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 11 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제 1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14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 15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제 16 조 (정견발표) 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시 추가로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다만, 당 국회의상임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② 정견발표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 17 조 (합동토론회) 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합동토론회를 할 수 있다.

② 합동토론회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8 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일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단, 후보자의 학.경력 및 출마의 변 등이 포함된 유인물을 제작.배부

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허용할 수 있다. 유인물의 제작·배부 시 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4. 후보자 등의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 행위
5.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외의 토론회 등 개별적 모임 개최행위

제 5 장 투·개표

제 19 조 (투표)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선언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으며 불참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 ③ 의원은 위원회로부터 명패·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의원 전원의 투표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선포한다.

제 20 조 (개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봉한 후 투표지 수와 명패 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수만큼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감표위원의 검표 및 명패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 21 조 (감표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전 참석의원 중에서 감표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투.개표 과정을 감시하도록 한다.

제 6 장 당선자 결정

제 22 조 (당선자 결정) ①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

와 차점자(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

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

선순,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 23 조 (당선자 결정통지 및 공고) 제22조(당선자 결정)에 의하여 당

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당선자에게 통지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별 칙

제 24 조 (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사자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 25 조 (징계) 제5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결정에 의

해 경고, 후보등록취소,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26 조 (불복신청) ①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익일까지 위원

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 27 조 (실무지원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반업무의 지원은

중앙당 원내행정국에서 담당한다.

제 28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12. 5)

이 규정은 2005년 12월 5일 제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원내대표및정책위원회의장선출규정

【 2005년 12월 5일 제정 】

개정 2008.9.30
 2014.2.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이하 ‘정책위원회의장’ 이라 한다)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당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국회교섭단체에 등재된 당 소속의원은 선거권이 있다.

② 당원으로서 후보자 등록일까지 국회교섭단체에 등재된 당 소속의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당해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까지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에는 당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조 (선거일) ①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는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대표최고위원이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②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까지 개최하며, 이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각 후보자 2인이 1조가 되어 동반 선출한다.

③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궐위된 때에는 동반

선출된 정책위의장은 당연 사퇴하고, 원내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대표최고위원이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 ④ 정책위의장이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궐위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내대표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며, 선거일은 대표최고위원이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4 조 (의원총회)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대표최고위원이 공고한 선거일에 원내대표가 소집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원내대표가 궐위 시에는 대표최고위원이 소집한다.

제 5 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설치 및 구성) ①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7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3. 후보자 등록공고 기타 등록관련 사무
4. 후보자 및 소속의원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합동토론회 및 정견발표 등 선거운동 관리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단속 및 시정조치 등
9.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0.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선출에 관한 제업무

제 8 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제 9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후보자

제 10 조 (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2일에 한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일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 11 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제 1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14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 15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제 16 조 (정견발표) 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시 추가로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② 정견발표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 17 조 (합동토론회) 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합동토론회를 할 수 있다.

② 합동토론회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8 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일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단, 후보자의 학·경력 및 출마의 변 등이 포함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허용할 수 있다. 유인물의 제작·배포 시 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4. 후보자 등의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 행위

5.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외의 토론회 등 개별적 모임 개최행위

제 5 장 투·개표

제 19 조 (투표)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선언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후보자가 각각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으며 불참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③ 의원은 위원회로부터 명패·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의원 전원의 투표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선포한다.

제 20 조 (개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 즉시 개

표를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봉한 후 투표지 수와 명패

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수만큼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감표위원의

검표 및 명패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 21 조 (감표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전 참석의원 중에서

감표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투.개표

과정을 감시하도록 한다.

제 6 장 당선자 결정

제 22 조 (당선자 결정) ①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조 또는 1인이면 최

고득표자와 차점자(2조 또는 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조 또는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이때에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 23조 (당선자 결정통지 및 공고) 제22조(당선자 결정) 에 의하여 당

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당선자에게 통지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임기

제 24 조 (임기) ①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의장이 임기 중 사퇴 또는 유고로 인하여 궐위되어 제3조제4항에 의거, 정책위의장을 의원총회에서 새로 선출할 경우, 후임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그 때까지로 하며,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임기만료 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

위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소속 국회의원 당선자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별 칙

제 25 조 (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사자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 26 조 (징계) 제5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결정에 의해 경고, 후보등록취소,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27 조 (불복신청) ①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익일까지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 9 장 보 칙

제 28 조 (실무지원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반업무의 지원은 중앙당 원내행정국에서 담당한다.

제 29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원내대책위원회규정

【 1997년 12월 29일 제정 】

개정	1998. 5. 7	1998. 11. 26
	2000. 7. 12	2002. 5. 6
	2003. 6. 10	2005. 12. 5
	2010. 2. 26	2014. 2. 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원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

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원내대표가 원내대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국회대책

2. 국회상임위원회 활동의 조정

3. 의원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5.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6. 기타 국회활동에 관한 사항

제 4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겸하며, 위원장이 유고나 궐위 등

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지원부서)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내대표

비서실, 원내기획실, 국회정책연구위원실을 둔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실별로 필요에 따라 산하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부서를 총괄·지휘한다.

제 2 장 보 칙

제 7 조 (긴급대책) 국회활동에 관하여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위원

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단회의의 의결로

국회대책을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2005. 12. 5)

이 규정은 2005년 12월 5일 제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

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책위원회규정

【 1997년 11월 21일 제정 】

개정	1998.4.10	1998.11.26
	2000.5.12	2002.2.27
	2002.4.2	2002.5.10
	2003.4.11	2004.3.4
	2004.3.23	2005.5.13
	2005.11.24	2008.9.30
	2010.2.26	2010.9.30
	2014.2.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정책위원회 의장.약간인의 부의장
2.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3. 정책위원회 실무지원부서의 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4.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당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약간인의 위원

- ②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분담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정책조정위원회의 수와 정책조정위원회별 담당분야는 정책위원회의장이 제안하고 원내대책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확정한다.

제 2 장 정책위원회 회의

제 3 조 (회의의 종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 정책위의장단회의(이하 ‘의장단회의’)로 구분한다.

② 각 급 회의의 장은 의장이 한다.

③ 각 급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전체회의) ① 전체회의는 정책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당 강령 및 전국규모 선거의 정책공약 등 주요정책 현안을 심의한다.

② 전체회의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 5 조 (의장단회의) ① 의장·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
2. 당 입법사안 개발 및 심의
3. 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5. 당정협의 업무

② 의장단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정책조정위원회

제 6 조 (구성) ①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각 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정책조정위원회에 정책개발 및 당정협의 활동의 지원을 위해 소관 국회상임위원회별로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필요한 수의 정책개발연구위원을 둔다.

③ 각 정책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인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조 (기능) 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 및 정책활동지원과 조정
2. 공약 등 정책개발
3. 당과 정부 간의 정책협의.조정
4. 능동적인 민의 수렴과 정책반영
5. 여의도연구소와 유기적인 정책연구활동

제 8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정책조정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되, 부위원장은 의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② 각 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소관분야의 직무를 관장하며, 소관분야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부위원장은 정책조정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소집 및 의사) ① 정책조정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 당해 정책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정책자문위원회

- 제 10 조 (구성 및 운영)** ① 당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당내인사와 각계 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조정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정책조정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회는 의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위촉하는 해당 상임위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 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간사가 된다.
- ③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
- ④ 의장은 필요시 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1 조 (민원정책자문위원 등)** ① 민원활동의 강화와 민원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위촉하는 60인 이내의 민원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민원상담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약간인의 상근민원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민원정책자문위원 및 상근민원상담위원, 정책기획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

제 5 장 인사.예산

- 제 12 조 (임용자격 및 임면) ①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개발연구원의 임면은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4조를 준용하고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② 정책위원회는 정책연구소에 정책개발연구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 제 13 조 (위임 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관련 정책조정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정책개발연구원의 임용자격기준

직 책	자 격 기 준
정책조정실장 수석전문위원 정책위원회 산하 국의 장, 정책위원회 당직자 비서실의 국장	1.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국장(급)으로 재직한 자 2. 원내교섭단체인 정당의 국장(급)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3. 국회, 행정부 등에서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기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학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5.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박사학위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경력이 있는 자

<p>전문위원, 정책위원회신하국의 부국장 정책위원회당직자비서실부국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부국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원내교섭단체인 정당의 부국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3. 국회, 행정부 등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기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학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5. 석. 박사학위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경력이 있는 자
<p>심의회위원, 정책위원회신하국의 부장 정책위원회당직자비서실의 부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원내교섭단체인 정당의 부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3. 국회, 행정부 등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기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학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p>정책위원회신하국의 차장 과장 정책위원회당직자비서실의 차장 과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차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원내교섭단체인 정당의 차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3. 국회, 행정부 등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기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학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p>정책위원회신하국의 주임 간사 정책위원회 당직자 비서실의 주임 간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재직한 자 2. 원내교섭단체인 정당의 사무처당직자로 재직한 자 3. 국회, 행정부 등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기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학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의원입법절차규정

【 1999년 3월 31일 제정 】

개정	2000. 7. 12	2002. 5. 6
	2003. 6. 19	2004. 11. 18
	2005. 11. 28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의원입법안의 작성 및 처리 등 당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입법을 통하여 법률의 실효성 제고와 정책정당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법안 작성 및 제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 제출 법률안 서식에 따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문기관)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 산하 법제사법 상임위원회 지원팀 및 해당 상임위원회 지원팀으로 하여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에게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하고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검토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4 조 (입법의견 수립)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법률안 제출 의원은 법률안의 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 5 조 (심의 및 의결)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종 성안된 법률안을 의장단회의에 상정하여 법률안 제출여부 및 당론수립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며, 법률안 심의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관련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관련 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및 제출 의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제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안 중 당론수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은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단, 의원총회

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 제출 필요성은 있으나 당론수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은 개별 의원입법으로 발의의원이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

- ③ 법률안 제출의원은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④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결된 법률안을 원내대표에게 통보하고, 원내대표는 국회 제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⑤ 제2항의 심의를 위해 당해 의원은 최종 법률안과 필요부수 등 자료를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2005. 11. 28)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8일 개최되는 제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 1997년 12월 29일 제정 】

개정	1998. 11. 26	2000. 7. 12
	2002. 2. 27	2002. 3. 8
	2003. 6. 10	2010. 2. 26
	2014. 2. 25	
전면개정	2007. 5. 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장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후보자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당기구’라 함은 당헌 제3장 (당기구)에 규정된 당기구 및 그 당기구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직

선거법의 용어를 준용한다.

제 3 조 (선거사무협조) 당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① 당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이하 ‘국민참여선거인단’이라 한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5 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등)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거관리위원등의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또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기타 당원이 아닌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후보자등의 신분보장)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표·개표참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8 조 (설치 및 구성)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반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9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 후보자 등록 공고 및 기타 등록 관련 사무
3.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최고위원회에 등록상황 보고

4. 국민참여선거인단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합동연설회 및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선거운동 관리 업무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 공고 및 통지
8.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단속, 시정조치 등 후보자 및 국민참여선거인단, 당원에 대한 제재
9.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0. 기타 이 규정에 규정한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제 10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수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최고위원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2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회의결과의 공개 등)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4 조 (선거공보)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 3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5 조 (선거권) ① 제24조(명부의 확정)의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선거인단 명부(이하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라 한다)확정일(이하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 확정일’이라 한다)현재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당헌 제13조(구성)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 15 조의 2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구성)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유권자수의 0.5%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대의원 선거인
 2. 당원 선거인
 3.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이하 ‘국민 선거인’ 이라 한다)
- ② 제1항 제1호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8분의 2, 제2호는 8분의 3, 제3호는 8분의 3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선거일 까지로 한다.

제 15 조의 3 (대의원 선거인)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인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8분의 2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대표최고위원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당소속 국회의원
5. 당소속 시·도지사
6. 전국위원회 위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8.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9. 국책자문위원회 위원
10. 재정위원
11.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12. 당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13.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14.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5.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16.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

17.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각 20인

② 제1항 제8호의 범위는 중앙위원회 의장, 부의장, 고문, 분과위원장, 지도위원, 자문위원, 총간사, 시.도당연합회장, 분과위원회 간사,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0인, 시.도당연합회 부회장 각 3인 및 시.도당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5호의 대의원 선거인은 최소 유권자를 갖는 당원협의회와 최대 유권자수를 갖는 당원협의회 선거인단 수 비율을 1:2로 하여, 당원협의회별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국단위 공직선거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세부적인 배분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한 국회의원선거구의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제1항 제16호의 대의원 선거인은 책임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 1인을 포함하여 각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3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비후보와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제청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300인 이내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의 대의원 선거인은 책임당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책임당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제1항 제15호 내지 제16호의 대의원 선거인 중 5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 ⑦ 제1항 제15호 내지 제16호의 대의원 선거인 중 20% 이상 40% 이하는 만 45세 미만 당원으로 구성한다.
- ⑧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대의원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전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15 조의 4 (당원 선거인) ① 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당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되, 당원 선거인 정수의 50%는 책임당원 명부에서 추첨하여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책임당원 추첨에서 탈락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중에서 추첨하여 선정하며, 그 구체적인 방식 및 선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당원 선거인 수는 최소 유권자를 갖는 당원협의회와 최대 유권자를 갖는 당원협의회 선거인단 수 비율을 1:2로 하여, 당원협의회별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국단위 공직선거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세부적인 배분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당원협의회별로 배정된 당원 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

나 시 단위의 기초단체 지역은 45세 미만이 30%이상, 군 단위의 기초단체지역은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당원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전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15 조의 5 (국민 선거인) ① 국민 선거인은 당원이 아니면서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에 의한 국민 선거인 공모에 응한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국민 선거인 수는 최소 유권자를 갖는 국회의원선거구와 최대 유권자수를 갖는 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인단 수 비율을 1:2로 하여,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국단위 공직선거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세부적인 배분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③ 국회의원선거구별로 배정된 국민 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단위의 기초자치단체지역은 45세 미만이 30% 이상,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지역은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민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전 20일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국민 선거인의 공모 및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5 조의 6 (여론조사) ①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국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공인된 복수의 국내 조사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 선정.여론조사의 방식.조사과정 참관 및 관리감독.투표결과 반영 전 검증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한 여론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둔다.

③ 전문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6 조 (피선거권)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 17 조 (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제1항의 제명, 탈당권 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자

제 18 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의 제명, 탈당권 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 4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 19 조 (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위원회가 제안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 20 조 (선거일) ① 선거일이란, 투·개표를 실시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일을 말한다.

② 선거일공고는 선거일전 10일까지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선거일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제안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 5 장 국민참여선거인단명부

제 21 조 (명부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까지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이하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②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2 조 (명부열람) ① 위원장은 제21조(명부작성) 제1항에 의한 명부작성 완료일 다음 날부터 1일 이상(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열람개시일 전 2일까지 명부 열람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명부의 정정 등) ① 위원장은 열람기간을 포함하여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작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명부의 확정)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는 제23조(명부의 정정 등) 규정에 의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됨으로써 확정된다.

제 25 조 (명부사본의 교부) 위원회는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 경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 사본 1부와 전산자료 복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후보자

제 26 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0조(기탁금 등)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
2. 이력서
3. 당적확인서
4. 당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5.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위원회가 정한 서류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⑤ 후보자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7 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6조(후보자등록)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3.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기탁금 등)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 ③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기탁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장 선거운동

제 31 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당원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 32 조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 33 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② 선거일에는 제37조(합동연설회) 제1항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하

고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34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원이 아닌 자
2. 위원
3.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제 34 조 2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① 당헌 제95조(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에 의거하여 대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선거일 전 240일부터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이력서
2. 당적확인서
3. 당비 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위원회가 정한 서류

② 대선예비후보자등록 후에 제27조(등록무효) 제1항 및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 무효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③ 대선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대선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4 조의 3 (대선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① 대선예비후보자는 공직 선거법 규정에서 허용하는 대선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대선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5 조 (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또는 국회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회관 사무소, 당원협의회·국회의원 후원회는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선거홍보물)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거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 각 1종을 작성

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1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

를 달리할 수 있다.

1. 국민참여선거인단 정수의 20분의 1 비율한도의 선전벽보

2. 국민참여선거인단 정수에 해당하는 책자형 소형인쇄물(8면 이내)

② 홍보물의 첩부·발송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하되,

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홍보물의 게재내용·규격·제출·첨부·발송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7 조 (합동연설회) ① 후보자 합동연설회(이하 ‘합동연설회’ 라

한다)는 선거기간에 개최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횟수와 구

체적인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

여 이를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

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합동연설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

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⑤ 합동연설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8 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① 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

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④ 대담·토론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9 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

위

2.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서명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3.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선거사무소의 설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행위

4. 국민참여선거인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개별 접촉하는 행위

5.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당원협의회를 방문하거나 당원협의회 단

위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6.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7. 선전벽보와 소형 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8.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

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9. 제37조(합동연설회)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

회 개최 행위

제 8 장 선 출

제 40 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투표소에서 투표하되, 그 구체적인 방

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

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1 조 (투·개표등) ① 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 기타 투·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42 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① 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 ②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투·개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43 조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장의 질서유지)** ①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위원장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44 조 (당선인 결정)** ① 당선인의 결정은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80%, 여론조사 결과 2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 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하되,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본문에 의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최고득표자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제 45 조 (당선인 결정 공고·통지 등) 제44조(당선인 결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장 별 칙

제 46 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2. 경고
3. 윤리위원회 회부

제 47 조 (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가 제4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 (경고) ① 위원회가 제4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당사자에게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중앙당·시·도당·당원협의회(이하 ‘관련 당부’라 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0조(불복신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날 후 개최되는 모든 국민 참여선거인단대회장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을 상대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경고를 받은 당사자가 후보자인 경우 그 후보자는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의 합동연설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9 조 (윤리위원회 회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0 조 (불복신청) ① 제4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2일 이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 10 장 보 칙

제 51 조 (실무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제 52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7. 5. 21)

이 규정은 2007년 5월 21일 개최되는 제14차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선거대책기구규정

【 2002년 5월 6일 제정 】

개정	2003.6.19	2007.9.11
	2010.2.26	2014.2.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12조(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에 의거하여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 및 선거재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대통령선거대책기구로 중앙당에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라 한다)와 대통령후보자자문 및 보좌기관을 두고, 시·도별로 대통령선거 시·도선거대책위원회(이하 ‘시·도선거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이하

‘중앙선거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대통령선거 시·도선거대책본부(이하 ‘시·도선거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③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산하에 두는 대통령선거대책기구는 대통령 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설 등 조정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선거대책기구는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성하되, 대통령후보자 자문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는 즉시 대통령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 2 장 대통령후보자 자문 및 보좌기관

제 3 조 (자문기관) ① 대통령후보자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대통령후보자 자문기관은 대통령후보자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등에 선거운동 전반에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4 조 (보좌기관) 대통령후보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후보자비서실, 특보단, 대통령선거기획단(이하 ‘대선거획단’이라 한다), 유세지원단 등을 둘 수 있다.

제 5 조 (대통령후보자비서실) ① 대통령후보자비서실은 비서업무 기타 대통령후보자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비서실은 비서실장 1인, 수인의 부실장 및 보좌역, 필

요한 수의 사무처당직자를 둔다.

- ③ 대통령후보자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 ④ 대통령후보자비서실장은 대통령후보자의 명을 받아 대통령후보자보좌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제 6 조 (특보단) ① 대통령후보자는 선거운동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특보단장과 수인의 부단장,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 ② 특보단장과 특별보좌역은 대통령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③ 특보단장은 대통령후보자의 명을 받아 특별보좌역과 대통령후보자자문기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 7 조 (대선거획단) ① 대통령후보자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대선거획단을 둘 수 있다.

- ② 대선거획단은 대통령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단장과 수인의 부단장, 기획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선거획단장은 대선거획단의 실무지원을 위하여 대통령후보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실무지원기구로 실·팀을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실무지원기구는 실장과 팀장 및 수인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 ⑤ 대표최고위원은 대선거획단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처 당직자에게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제3항에서 규정한 각 실무지원기구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 8 조 (유세지원단)** ① 대통령후보자의 일정점검 및 경호,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세지원단을 둔다.
- ② 유세지원단은 단장과 수인의 부단장, 경호팀과 수행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 ③ 대표최고위원은 유세지원단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처당직자를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 제 9 조 (구성)**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중앙선거대책위원장’라 한다)과 수인의 부위원장, 중앙선거대책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③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며,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후보자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사무처 당직자를 보좌역으로 둘 수 있다.

- 제 10 조 (자문위원회)**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 상임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고문, 자문위원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후보

자가 임명한다.

제 11 조 (대변인단)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공식발표기관으로서 대변인과 수인의 부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며, 부대변인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③ 대변인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원기구를 둔다.

제 12 조 (기타 특별기구)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의 승인을 얻어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중앙선거대책본부

제 13 조 (구성)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선거업무 실무전반을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를 둔다.

② 중앙선거대책본부에는 총괄본부장과 수인의 총괄부분부장을 둔다.

③ 총괄본부장과 총괄부분부장은 대통령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며, 총괄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후보자가 지명하는 총괄부분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선거대책본부에는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로 분야별 집행본부, 선거재정·회계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 종합상황실, 실무지원기구를 둔다.

제 14 조 (분야별 집행본부의 구성 및 기능) ① 총괄본부장은 중앙선

거대책위원장과 협의와 대통령후보자의 승인을 거쳐 중앙선거대책본부에 분야별 집행본부를 두며, 각 집행본부 산하에 필요한 대책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집행본부는 본부장과 수인의 부분부장,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본부장은 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하고, 부분부장과 집행위원은 총괄본부장과 본부장의 추천으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 ④ 본부장은 각 집행본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명하는 부분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각 집행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및 총괄본부장과 협의하고 대통령후보자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부위원장, 대책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총괄본부장의 추천으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대책위원은 본부장의 추천으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 ⑦ 각 집행본부의 본부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원기구로 단·팀을 둘 수 있다.
- ⑧ 각 집행본부, 대책위원회, 실무지원기구의 기능과 역할은 총괄본부장이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15 조 (재정위원회) ① 중앙선거대책본부에는 선거대책기구의 재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수인과 재정위원으로 구성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재정대책 수립 및 회계업무를 지원할 실무지원기

구로 재정기획단을 둔다.

제 16 조 (종합상황실) ① 중앙선거대책본부는 선거 상황점검 및 선거

대책기구간의 효율적인 업무 조정·연락 등 선거업무 실무전반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둔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총괄본부장의 추천으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③ 종합상황실장은 총괄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실무지원기구를 통할하고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 17 조 (실무지원기구의 구성) ① 각 단·팀은 단·팀장 각 1인과

수인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② 단·팀장은 각 단·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괄본부장은 사무처 당직자를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중앙선거대책

본부의 각급 실무지원기구에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지방선거대책기구

제 18 조 (구성) ① 대통령선거를 위한 지방선거대책기구로 중앙선거

대책위원회에 시·도 선거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시·도 선거

대책본부를 둔다.

② 각 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중앙선거대책본부에

준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본부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기구

를 둘 수 있다.

제 19 조 (시·도선거대책위원회) ① 시·도 선거대책위원장은 해당 시·

도당위원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후보자가 최고위원회

와 협의하여 시.도선거대책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시.도선거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도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제 20 조 (파견근무 등) 총괄본부장은 사무처당직자를 지방선거대책기

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21 조 (위임규정)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7. 9. 1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1일 개최되는 제1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직후보자추천규정

【 2003년 12월 26일 제정 】

개정	2005. 8. 4	2006. 1. 9
	2007. 9. 11	2010. 2. 26
	2012. 2. 9	2014. 2. 25
전면개정	2005. 12. 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9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제100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제101조(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제102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103조(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및 제104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규정된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추천절차) 공직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 국민참여선거인 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제 2 장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제 3 조 (자격) ①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다만, 당헌 제103조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위반으로 최중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공모) ①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이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라 함. 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 위원회의 의결

로 후보자 공모일과 기간을 정한다.

-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이라 한다)은 공모개시일 전 3일부터 중앙당, 시·도당(국회의원사무소 포함)의 게시판 및 당 홈페이지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공직후보자 추천신청기간은 공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④ 신청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와 관련된 사무를 중앙당 관련부서 및 시·도당 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신청) ①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공천관리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위임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 추천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제출서류)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후보자 추천 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서약서

4. 타당 당적 말소 서약서
5.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6. 이력서 2통
7. 자기소개서 1통(소정양식)
8.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통
11.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1
통
12.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벌금형 이상) 1통
1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주민등록초·등본 각1통
1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15. 사진 3매
16. 기타 공천관리위원회 의결 지정서류

제 7 조 (추천신청자 공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 후 지체 없이 중앙당, 시·도당(국회의원사무소 포함) 게시판 및 당 홈페이지 등에 공직후보 추천신청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 8 조 (자격심사)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이 장

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서류심사, 득표기반조사(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이 반영된 자격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공모가 완료된 후 추천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계량적인 심사지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격심사를 하여야 하며,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2인 이상의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여론조사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서류심사, 득표기반조사(실태조사), 여론조사, 면접, 후보간 토론회 및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을 통해 단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헌 제10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의해 시·도지사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원칙으로 하되, 취약지역에서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신청자가 1인이거나(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정 후보자 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 수를 말함) 복수의 추천신청자 중 1인(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정 후보자 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 수를 말함)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단수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와, 당헌 제103조(우선추천 지역 선정 등)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우선추천지역에 단수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한다. 단, 우선추천지역의 경우에는 당헌 제98조(국민공천배심원단)에 따라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한다.

- ⑥ 위원회는 각종 공직후보자 추천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및 유능한 정치신인과 사무처 당직자 중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다.
- ⑦ 시·도당 위원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당해 시·도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⑧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한다. 단,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인재영입위원장은 인재영입과 관련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조 (부적격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후보 추천신청자는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3.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4. 2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6.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7.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8.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9.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10.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
11.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제 4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0 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공직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와 시·도당에 시·도당 공직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 11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선거구로 결정한 곳의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
 4. 선거관련 유권해석
 5. 선거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사항
- ②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통할·관리하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국민공천배심원단

제 13 조 (구성) ①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헌 제98조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 다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배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②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위원 선정, 방식, 절차 등 구성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③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위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 위원은 각각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비례대표공천위원 포함)을 겸임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의 각급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 ⑤ 국민공천배심원단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인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기능) ①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중 다음 1호와 2호를,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중 다음 3호를 각각 심의대상으로 한다.

- 1. 국회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 2.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 3.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원장·부위원장)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최고위원회

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
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제 16 조 (소집 및 의사) ①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때 또는 해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에서 요청

한 때 소집한다.

②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보자의 부적격 판단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심의 등) ① 국민공천배심원단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명한 1인은 배심원단 회의에 출석하여 공천관

리위원회가 의결한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상자를 출석시켜 면

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천심사와 관련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④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1회

에 한하여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후보자적격여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한다.

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심의한 결과를 최고위원회의 및 해당 공천관

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대표최고위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의 지원

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 6 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제 18 조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후보자)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이하

‘경선’이라 한다)의 후보자는 공직후보 추천신청자중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후보자(이하 ‘경선

후보자' 로 한다)로 확정.의결한 자로서 중앙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 19 조 (경선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① 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각급 선관위는 규칙에 정하는 대로 제재조치

를 행하여야 한다.

제 20 조 (경선후보자 등록)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경선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5일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 이라 한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선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선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제 21 조 (경선후보자 사퇴) 경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경선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경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 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1. 당원선거인
2. 국민선거인

제 23 조의 2 (당원선거인) 당원선거인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2분의 1로 하며,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당원 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제 23 조의 3 (국민선거인) ① 국민선거인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2분의 1로 하며, 당원이 아니면서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 등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국민선거인은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복합 선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한다.

④ 국민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단위는 45세 미만이 30% 이상, 군 단위는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 24 조 (명부작성 및 확정) 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로 선거인단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이하 ‘선거인단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단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단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의 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③ 선거인단명부의 작성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 25 조 (명부 사본의 교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그 명부를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 26 조 (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 이라 함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
- ② 선거일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경선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7 조 (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 이라 함은 선출

되거나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

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

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

로는 일체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 방법 및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

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8 조 (공직후보자의 추천 확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

를 존중하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

친 불법선거운동이나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제8조(자격심사)에 의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직후보자로 추천

한 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직후보자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직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

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로 공직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45일까지 후보자추천을 완료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⑤ 제3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에 있어 공직후보 추천을 신청한 최

고위원은 당해 선거구의 추천자를 의결하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 29 조 (재의결)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48조(구성)제4항에 따라 최

고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당헌

제48조(구성)제5항의 규정에 의해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

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 시에는 최고위원

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7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 30 조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대상이 된다.

1.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의 공모에 추

천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

천위원회 ’ 포함)의 자격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 대상으로 확정된 자

2. 최고위원회의의 추천으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

회 ’ 포함)의 자격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 대상

으로 확정된 자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 위원으로 참

여한 자는 당해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31 조 (자격심사)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추천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제8조(자격심사) 내지 제9조(부적격 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정치신인으로 추천한다.

제 32 조 (추천대상자의 확정)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당해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5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정수 내에 해당하는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을 정하여 최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는 제14조제1항의 1호에 해당하는 추천대상자에 대해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상정한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에 대해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다.
- ④ 최고위원회가 부결할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심사하여 최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 8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제 33 조 (후보자의 추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후보자의 추천방법은 당헌 제91조(후보자선출) 내지 제92조(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등)에 규정된 대통령후보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국민참여선거인단은 국민참여 시·도선거인단으로 한다.

제 34 조 (국민참여 시·도선거인단 구성) 국민참여 시·도선거인단은 당해 시·도 유권자수의 0.1% 이상으로 하고, 선거인단의 구성방식은 대통령후보선출 선거인단의 구성방식을 준용한다.

제 9 장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의 추천

제 35 조 (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의 추천방법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제6장(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에 규정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선거인단은 국민참여 자치구.시.군선거인단으로 한다.

②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의 추천을 당해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45일까지 완료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 36 조 (국민참여 자치구.시.군 선거인단 구성) 국민참여 자치구.시.군선거인단은 해당 지역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구성방식을 준용하되,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제 37 조 (후보자의 추천) ①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방법은 중앙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제6장(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에 규정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선거인단은 국민참여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선거인단으로 한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군지역 제외, 자치구 일부지역이 타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해 한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 일부지역 제외)별로 관할 광역·기초의원 정수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당해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완료한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 38 조 (국민참여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선거인단 구성) ① 국민참여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선거인단은 해당 지역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구성방식을 준용하되,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② 국민참여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선거인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 2에 따른 당원선거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11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추천

제 39 조 (공모 등)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는 제3조(자격) 내지 제6조(제출서류)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공모한다. 다만, 공모와 관련된 사무를 시·도당 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40 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 대상) 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 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 대상이 된다.

②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당해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41 조 (자격심사) 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제8조(자격심사) 내지 제9조(부적격 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2 조 (추천대상자의 확정)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 추천대상자의 확정은 제32조에 규정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추천대상자의 확정방식을 준용한다.

제 12 장 보 칙

제 43 조 (추천장 교부) 공직후보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추천장을 교부한다.

제 44 조 (이의신청의 금지) 추천신청자는 이 규정에 의한 추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8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선과정에 불공정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5 조 (제재규정) ①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당해 선거구의 공직후보추천자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며 해당 행위를 할 때에는, 사무총장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특히, 경선에 불복하고 당해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는 공직선거일 기준 5년간 복당을 금지한다.

② 공직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가 공천과정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즉시 자격을 박탈·제명하고 당원규정 제5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복당 및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 추천을 금지한다.

제 46 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비리, 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 범위반 행위에 대한 형 확정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의 후보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7 조 (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추천신청자의 추천에 관한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 48 조 (위탁경선 실시규정)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위탁경선을 실시할 경우, 자치구.시.군의 장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경선은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9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9. 1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1일 제1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 2. 9)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 개최되는 제15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청산위원회규정

【 1998년 4월 18일 제정 】

개정	1998. 11. 26	2000. 7. 12
	2002. 5. 6	2003. 6. 19
	2005. 12. 5	2010. 2. 2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10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의 규정

에 의거한 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된 때에는 잔여재

산처분 등 청산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멸 당시의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로 구성

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잔여재산의 처리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현존사무의 종결

4. 기타 청산절차 등 청산전반에 걸친 사항

제 4 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의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 당시의 대표최고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당헌 제30조(권한대행)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멸 당시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사무처당직자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12. 5)

이 규정은 2005년 12월 5일 제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무감사규정

【 1997년 12월 29일 제정 】

개정 1998.11.26 2002.5.6

2003.6.10

2005.12.8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당무의 처리와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당무수행과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각종 당기구의 당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의 2종으로 한다.

② 일반감사는 당무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특정부분의 당무에 대하여 또는 특정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 3 조 (감사권) ① 일반감사는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② 특별감사는 감사부와 대상에 대하여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처를 통하여 예산이 배정되는 집행기구이외의 당내기구에 대한 회계감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 4 조 (감사반) 감사반은 감사할 때마다 사무총장이 구성한다.

제 5 조 (감사반원의 준수사항) ①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반원은 감사를 받는 부서의 정상적인 활동과 업무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를 받는 대상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감사의 협조) 감사를 받는 부서는 감사반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7 조 (결과보고) 감사를 완료한 감사반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12. 8)

이 규정은 2005년 12월 8일 제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연구모임지원규정

【 1997년 12월 29일 제정 】

개정 1998. 11. 26 2002. 5. 10
 2005. 12. 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처당직자 등의 자발적 연구모임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모임이라 함은 당무발전도모 및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처당직자 등 20인 내외로 구성되고 당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

제 3 조 (연구모임지원위원회) ①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을 위해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연구모임의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모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연구모임등록 등) ①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처당직자 등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당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모임의 대표 또는 간사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모임등록신청서

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모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연구모임에는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연구모임별 최소 5인 이상 적정한 비율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 6 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당에서는 연구모임에 적정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확정된 연구활동비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모임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12. 5)

이 규정은 2005년 12월 5일 제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년 월 일

연구모임지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연구모임명:

2. 목 적:

3. 구성인원:

성 명	소속 및 당직	날 인	비 고

신청인대표자 □

사 무 총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년 월 일

본 연구모임의 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모임명		
제출자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연구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별첨>	
연구총액	원	
활동비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기타		

사무총장 귀하